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2

#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martwork in Private Sector)

김성우/권현준/김미정/황인표/이학수

2011. 12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총괄책임자 : 김 성 우

참여연구원 : 권 현 준

김 미 정

이 학 수

황 인 표



# 목 차

<b>요 약 문</b> .....	8
<b>제 1 장 서 론</b> .....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의 방법 .....	17
<b>제 2 장 본 론</b> .....	19
제 1 절 국내외 동향 .....	19
1. 국 내 .....	19
2. 미 국 .....	19
3. 영 국 .....	20
4. 네덜란드 .....	21
5. 일 본 .....	24
6. 독 일 .....	27
7. 헝가리 .....	27
8. 호 주 .....	27
9. 오스트레일리아 .....	28
제 2 절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	29
1.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촉진법안 .....	29
2.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설서 .....	37
제 3 절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전환방안 연구 .....	37
1. 스마트워크 홍보 .....	37
2.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재 개발 .....	41
3. 스마트워크 홍보 및 교육 시범적용 .....	43

## 4 목 차

제4절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46
1. 개요 및 필요성 .....	46
2. 성과 지표개발 및 활성화 촉진 .....	47
3. 스마트워크 기술개발 및 표준화 .....	69
4.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	82
5.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 .....	96
<b>제3장 결론 및 시사점 .....</b>	<b>99</b>
참고문헌 .....	100
<b>부 록</b>	
1.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안	
2.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시범교육 설문지	

## 표 목 차

〈표 2-1〉 공공기관별 소속직원의 재택근무 지원내용	20
〈표 2-2〉 영국의 민간부문 추진사례	20
〈표 2-3〉 Hampshire의 MATTiS smarter working centres	21
〈표 2-4〉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특징(전국 99개 운영, 2010년 7월 기준)	22
〈표 2-5〉 민간 주요 스마트워크센터의 비교	23
〈표 2-6〉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대상설비	26
〈표 2-7〉 대상별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39
〈표 2-8〉 대상별 스마트워크 교육방향 및 내용	42
〈표 2-9〉 스마트워크 맞춤형 시범교육 추진개요	43
〈표 2-10〉 스마트워크 교육대상	45
〈표 2-11〉 스마트워크 교육 효과	45
〈표 2-12〉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실태조사 현황	47
〈표 2-13〉 영국 텔레워커 수	50
〈표 2-14〉 성별, 고용상태별 텔레워커 비율	51
〈표 2-15〉 고용형태별 분류	52
〈표 2-16〉 일본의 텔레워크 실태조사 개요('00년)	52
〈표 2-17〉 스마트워크 근로자 정의	54
〈표 2-18〉 시간과 장소 기준 프레임워크	54
〈표 2-19〉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67
〈표 2-20〉 재택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75
〈표 2-21〉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76
〈표 2-22〉 모바일오피스 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77
〈표 2-23〉 스마트워크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능	78

6 표 목 차

〈표 2-24〉 스마트워크 기술트리 .....	79
〈표 2-25〉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중점/미래기술 .....	81
〈표 2-26〉 국내 기업 해외진출 현황 .....	82
〈표 2-27〉 화상회의 단말 현황(단위: 개) .....	83
〈표 2-28〉 태블릿 단말 현황 .....	83
〈표 2-29〉 화상회의 솔루션 현황 .....	84
〈표 2-30〉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현황 .....	85
〈표 2-31〉 전자문서 솔루션 현황 .....	85
〈표 2-32〉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현황 .....	86
〈표 2-33〉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현황 .....	86
〈표 2-34〉 통합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현황 .....	87
〈표 2-35〉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기업리스트 .....	88
〈표 2-36〉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목표 및 세부추진사항 .....	95
〈표 2-37〉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역할 및 기능 .....	96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	18
[그림 2-1] Double U 재단의 구성 .....	24
[그림 2-2]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신청절차 .....	25
[그림 2-3] 호주 원격근무 리서치 센터 웹사이트 .....	28
[그림 2-4] “스마일! 스마트워크“ 홍보캠페인 .....	38
[그림 2-5]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육 추진 개요 .....	41
[그림 2-6] 스마트워크 시범교육 현장 .....	44
[그림 2-7] 스마트워크 서비스 분류 .....	77
[그림 2-8]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영향요인 .....	98

## 요 약 문

### 1. 제 목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 방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원격근무를 하는 형태다. 정부는 스마트워크 방식을 공무원과 민간기업에 대폭 확산시키기로 하고,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 중 30%(약 800만 명)가 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럴 경우 수도권 근로자는 90분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고, 연간 111만 톤의 탄소배출량과 1조 6천억 원의 교통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활성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ciation Technique)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유리한 출발선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사회의 스마트워크 확산 저해하는 요인에는 우리의 대면중시문화,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정보유출에 불안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워크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유출 및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등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긴 하나,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하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근로자

에 대한 차별대우, 과잉근로 및 과잉감시, 근로환경 열악화 등 해외 선진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스마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통해 근로소외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적극적 스마트워크 도입에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기존 업무방식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유연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크의 부정적 효과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선 원격근무의 효과, 수행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고용안정성, 인사고과 등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불어, 대면문화 중심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경영자는 직원의 근무태도 모니터링 부재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에 대한 인식이 높은게 현실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연근무제 도입 영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유연근무제의 도입필요성은 높게 인식(76.1%)하고 있으나, 인사담당자는 낮아(35.2%) 서로간의 인식차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근로자의 30%(‘12년 10%)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이라는 범정부적 목표를 설정하고, ‘10년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천력 있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 스마트워크 도입 세제지원, 정보보호 초지 규정,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등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촉진법안 마련

-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가능한 보안상 취약점 및 침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권고해설서 마련 및 온·오프라인 배포
-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전환방안 연구
  -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CEO/관리자/근로자 등 스마트워크 수요자별 맞춤형 교재개발 및 시범적용
  -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홍보를 위해 유사 정책홍보 사례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연구
- 스마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계획 마련연구
  - 사회전반에 걸쳐 스마트워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수 있도록, 산·학·연·관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상시 의견교환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각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촉진 법안 마련
    -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그 미치는 범위 확정, 스마트워크의 도입 확산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관행정기관 구분/명시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해설서 마련 및 온·오프라인 배포(300부)
-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전환방안 연구
  - CEO/관리자/근로자 등 스마트워크 수요자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스마트워크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CEO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시범교육 실시(총 3회)
  -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할수 있는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연구 및 홍보동영상을 시범제작(3분내외 분량)
  -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교육시간 등에 본 연구과제

- 를 통해 개발된 맞춤형 교재 배포(400부) 및 홍보동영상 상영·홍보
- 스마트워크 활성화 증장기 계획 마련연구
    - 스마트워크 관련 학술문헌 및 실무보고서 조사·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 정책 추진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하고, 스마트워크 참여근로자 수 및 참여기업들 조사하기 위한 통계산정의 프레임워크(방법론) 가이드라인 제시
    - 스마트워크 서비스 실현을 위한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트리(Smartwork Technology Tree)를 분류하고, 스마트워크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 관련 문헌조사·분석을 통해 계획(안) 수립
    - 스마트워크 기술/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안) 도출

## 5. 정책적 활용 내용

-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스마트워크 도입 활성화 도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홍보동영상 및 맞춤형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행사(실천캠페인 등) 실시,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스마트워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증장기 세부 실행계획 수립

## 6. 기대효과

-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사업자, 근로자 등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전환을 통해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을 활성화하고, 도입·확대에 따른 업무의 탄력성 제공에 따른 물리·시간적 노동생산성 증대

## SUMMARY

### 1. Title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martwork in Private Sector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martwork is a work arrangement in which employees enjoy flexibility in working location and hours. The government is set to make a big push for “smart work” – wor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office using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the share of “smart workers” to 30 percent of the employed population by 2015.

Smartwork encourages employee productivity and work/life balance, and it reduces green house gas emissions by cutting down on commuter traffic. To reap all these and other potential gains, it is necessary to change Korea’s workplace culture. One characteristics of this culture is the high importance attached to face-to-face contact. As a result, teleworking employees could suffer disadvantages in performance evaluation. This may explain the low uptake of working away from the office in Korea.

For its part,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the system. It needs a systematic scheme to prevent information spill and to protect smart worker by introducing the smartwork.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lan to minimize negative cognitions toward smartwork.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marwork system and legislation
  -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enact policy which encourages more rapid diffusion of smartwork
  - "Inform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 for smartwork promotion" Guide
  
- Plan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toward smarwork
  - Develop the customized teaching materials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of smartwork and Trial Application
  - A study on the diffusion for smartwork culture and trial application
  
- Intermediate plan to promote the smartwork
  - Form a consultative group and take profession advice in order to promote smartwork

### 4. Research Results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marwork system and legislation
  - the legislation to support and promote of smartwork
  - "Inform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 for smartwork promotion" Guide(volume 300)
  
- Plan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toward smarwork

## 14 SUMMARY

- Develop the customized teaching materials and Trial Application(For CEO/Manager/Worker, 3 times)
- A study on the diffusion for smartwork culture and trial application(Video production that help all the people know “smartwork”)
- Intermediate plan to promote the smartwork
  -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smartwork techniques, overseas expansion plan of our smartwork techniques and products, development of indicator which estimates performance of smartwork promotion policy etc.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Utilization of the basic research for smartwork promotion policy

## 6. Expectations

- Change Our negative Perception toward smarwork and contribute to promote the smartwork
- Encourages employee productivity and work/life balance
- smartwork-related new job creation By constructing smartwork infrastructure and invigorating smartwork-related industry,

##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2. Research Method

### Chapter 2. Body

1.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work
2.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martwork system and Legislation
3. Study on Negative Recognition Change toward Smartwork
4. Intermediate plan to promote the smartwork

### Chapter 3. Conclusion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5년까지 노동인구의 30%가 스마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등 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련 제도기반의 미비 등 스마트워크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산재해 있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 역기능 대책 및 중장기적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15년 근로자 30%가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 제고방안연구,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3개 연구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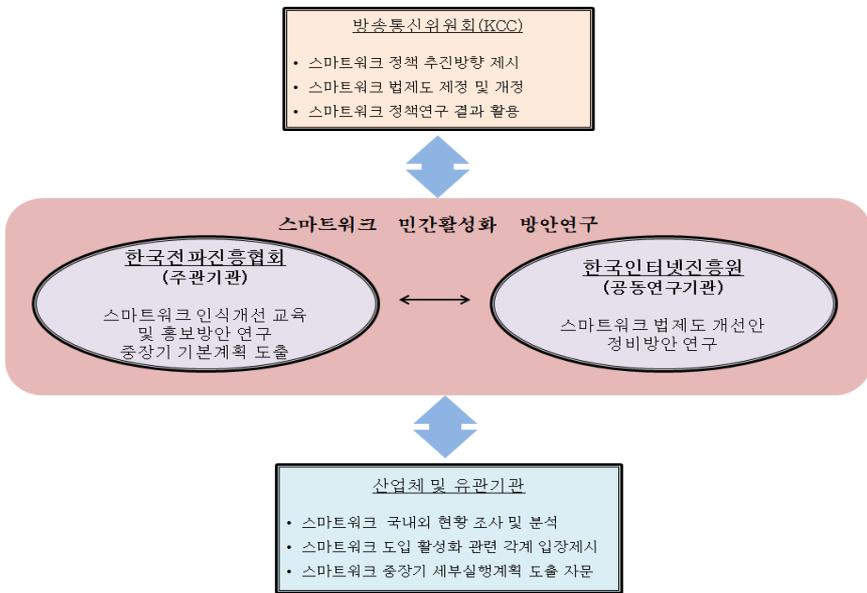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과제 수행한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식전환 교육교재 개발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홍보방안마련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 활성화 중장기 계획마련을 위해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

18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스마트워크 중장기 계획 보고서를 도출한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 도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설서 마련 등 과제수행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 제2장 본 론

### 제1절 국내외 동향

#### 1. 국 내

‘10.10월 정부 여당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스마트워크 확대를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행안부, 방통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스마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등 마련 중이다. 스마트워크 확대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교통문제 완화 및 환경보호, 출산율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2. 미 국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원격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텔레워크촉진법’을 제정(‘10.12월)하고, 최근 ‘비상대응체제 확보’의 수단으로 공공 스마트워크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GSA는 워싱턴 D.C 근처 소재한 14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 총 300개 좌석, 한 좌석당 일 72달러, 일년에 4,000달러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통신인프라 확산을 고려한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11. 4월부터 GSA는 예산문제로 텔레워크센터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Virtual Telework Environment’를 이용한 재택근무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중이다. 그리고 일년에 75일 이상 스마트워크하는 사람에게 일년에 1,000달러까지 장비 및 구입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 추진 중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는 전국적,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비즈니스센터, 소호형 비즈니스 센터 등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여 운영 중이다.

〈표 2-1〉 공공기관별 소속직원의 재택근무 지원내용

기관명	지원내용
재무부 세무 감찰관	인터넷 서비스 설비비 환불,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재택근무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50% 지원
국세청	지방사무소 사무공간 축소시 절감비용의 50%를 원격근무관련 기술에 투자
버지니아주	새로운 재택근무자에게 3,500달러를 지원
연방예 금공사	재택근무자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일정부분 보상

### 3. 영국

영국은 오랜 텔레워킹 경험으로 조직문화와 절차 등이 정착되었다. 정부기관의 경우 약 20% 재택근무로 인한 다양한 고용계약유형, 책상공유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village 에티켓, 스마트워크 승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EU의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텔레워킹에 관한 기본협정’(02)를 준수하고 있다. 금융 위기로 비용감소의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추세가 가속화된 가운데, 최근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속도 향상, 스마트폰 보안 향상, 베헤럴 데스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 국가정보기관에서 보안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메일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BT, Centrica 등 대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 영국의 민간부문 추진사례

주요기관	BT	Centrica(에너지기업)
지원내용	원하는 직원(6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를 실시하고 필요한 IT 자원을 회사가 지원	현재 8,500명 기술자들이 재택근무 실시하여 고객 민원 해결

햄프셔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을 위하여 햄프셔 주의회의 투자로 지역중소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센터의 초기 구축·운영비 지원(425,000파운드)한다.

〈표 2-3〉 Hampshire의 MATTiS smarter working centres

센터 위치	Aldershot, Basingstoke, Fareham 등 햄프셔 전역에 총 12개의 스마트워크 센터가 구축·운영
센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0여개 기업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일/월/장기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이용 가능</li> <li>○ 기본 이용료는 사무공간 임대(1.5파운드/시간),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임대(2.5파운드/시간)로 구분</li> <li>○ 컨설팅 및 사교행사 참가비로 연간 5,000~6,000파운드 부과</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스마트워크 초기 구축·운영비 지원(운영개시 후 1년만 지원, 1개소 당 90,000 파운드 지원)</li> <li>○ 햄프셔 스마트워크 센터 사이트는 센터 위치 및 센터 예약, 회원 관리, 최신 뉴스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li> </ul>

#### 4.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저탄소 정책과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스마트워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전국 약 100여개 민간 센터가 Double U재단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운영한다.

공무원의 스마트워크를 위해 Double U 재단을 통한 민간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다. 암스테르담시에서 파일럿정책으로 센터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스마트워크를 추진하였으나, 교통의 불편함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패하였다.

네덜란드는 관리자에 대한 일대일 교육을 통해 Top-down 방식의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 보급 및 문화확산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조기 확산·정착하고 스마트

워크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Champion"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표 2-4〉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특징 (전국 99개 운영, 2010년 7월 기준)

물리적 기반	
1)위치	이용자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접근성과 편의성(도서관, 음식점, 관공서, 유아원, 소모임 공간, 교육기관, 쇼핑몰 등)이 좋은 위치 선정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시청, 중앙행정기관, 신금융개발지역) 선호
2)주요시설	① 공동공간 (회의실, 식당, 세미나실, 주차장 등) ② 1인기업 개별 업무공간 (소음방지용 장치 구비) ③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시설 등을 구비 ※ 소기업 장기임대 사무실(예: Spaces)은 센터 소유주에게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므로 이 공간이 증가되는 추세임
3)네트워크화	개별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전국화(예: iGluu, Spaces) 및 글로벌화(예:Spaces) 추진 ※ 소규모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다른 센터와 계약을 통해 회원이 타지역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운영방법	
1)커뮤니티 및 social N/W 구축	이용자 community 및 생태계 조성 : 핵심 이용자층 타겟팅(벤처창업·온라인광고 및 디자인·전문직 프리랜서)하여 사교행사, 교육, 컨설팅, 구인·구직연계 등 고객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회원서비스 제공
2)비즈니스 모델	① 시설별로 다른 이용요금 부과 (예: 1인 업무공간 월30~60만원, 회의실은 1일 10만원정도) ② 회원제(예: 3개월/6개월/1년/2년이상)운영 및 장기임주자 우대 : 센터의 안정적 수입 확보와 회원간 소속감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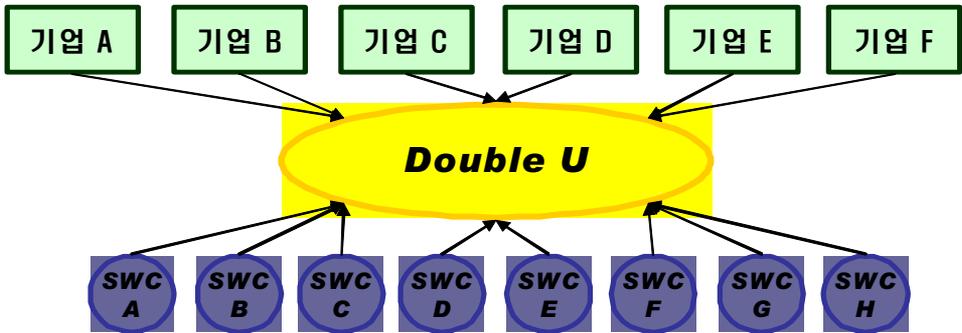
〈표 2-5〉 민간 주요 스마트워크센터의 비교

주요 기관	Bright City	Spaces	iGluu
위치	신금융비즈니스지역	도심지	헤이그 관청 근처
소유주	은행	디자인·패션회사	프리랜서 작가 등
주요 시설	공동이용시설(카페, 식당, 소모임 공간 등), 업무공간(1인 업무공간, 개방된 업무공간, 회의실, 영상회의실 등)	공동이용시설 및 1인기업 공간 (카페, 식당, 소모임 공간 등), 장기임대형 사무실	개인 공간, 회의실, 사물함, 전화방, 간이 주방 등
비즈니스 모델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회원제, 식당 운영 등	장기임대, 개인회원제, 식당, 주차, 단기임대, 독립사무공간 등	연간/6개월/월 단위 계약제
주이용자	1인 기업가, 소규모 기업가 등 창업초기 사업가	디자인·온라인 광고 등 창의적인 업종 종사자(학원, 프리랜서, 회사 등 디자인 관련 생태계 조성)	전문직 종사자 (프리랜서, 1인 기업, 그래픽 디자이너 등 IT 분야, 주로 젊은 전문직)
운영 프로그램	다양한 소규모 모임 및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초청 강연, 정보지식 교환·공유 등의 Social event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커뮤니티 형성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 구인·구직 정보 공유 등 Social networking 기회 제공
향후 계획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은 운영	해외지점을 개설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예정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사무실 장기 임대 서비스 예정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Double U 재단”은 스마트워크센터 및 이용기관이 상호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센터별 위치, 모습, 이용방법, 요금, 센터 예약 등 센터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센터의 이용자를 타 센터의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social networking 역할을 수행한다. Double U 재단과 한 번의 계약을 통해 모든 센터의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리 비용 감소는 물론, 안정적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Double U 재단을 통해 전국의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가능하며, 이용료는 Double U 재단에서 선지급된 9,000유로 범위내에서 각 센터에 지급 처리(시간당 9유로 지불)된다. 이때 책정된 9,000유로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재배정하고 Double U재단과 재계약한다.

[그림 2-1] Double U 재단의 구성



## 5. 일본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쿄를 중심으로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가 활성화되었으나, 보안문제와 대면결제 중심의 문화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지진 이후 BCP(Business Continuous Plan, 사업계속계획) 요구와 맞물린 스마트워크 효과가 입증되면서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이 최근 증대되고 있다.

'07년 12월 18일, 일본정부는 '일과 생활의 조화현장'에 따라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재난대비 및 신종플루 대처 능력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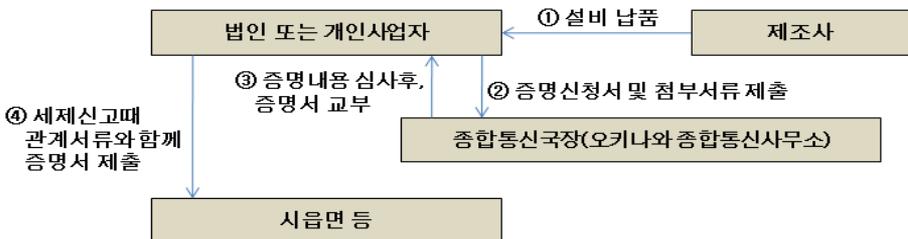
용해오고 있다. 일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텔레워크 환경정비 및 보급촉진 일환으로 '07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지방세)”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텔레워크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인식전환을 위해 일본 텔레워크협회 등을 통한 텔레워크 지침/규정개발, 상담센터 운영, 텔레워크 추진상, 이용통계조사, 텔레워크 학회, 텔레워크 심포지엄/세미나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개요

- (대 상) 텔레워크 설비를 도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상설비) VPN, 네트워크 감시장치 등 텔레워크 관계설비
- (세제특례) 취득 후 5년도분에 대해 상각 자산세 경감조치(과세표준을 2/3으로 조정)
- (적용기간) '07년 4월 1일 ~ '11년 3월 31일(4년간)
- (신청절차)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종합통신국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

민간부문의 경우, DESK@가 동경역, 신주쿠, 시가나와 직영점이 있으며, 일본우정 본사점 등을 비롯해 동경·대한 등에 7개의 제휴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공간, 회의실, 전원, 인터넷, 음료, 휴식공간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보안문제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제공하지는 않는다. 100여개 회원사와 계약형태로 운영하며, 개인용은 15분, 회의용은 30분을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2]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신청절차



〈표 2-6〉 텔레워크 환경 정비세제 대상설비

설치 장소	설비명		개요
회사	채택 근무	신 클 라이 언 트 서버	신클라이언트 단말장치로부터 송신된 입력 정보에 근거해 정보처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표시 화면 정보 또는 음성 정보를 신클라이언트 단말장치에 송신하는 서버(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보조기억장치 또는 전원 장치를 포함한다)
		V P N 장치	통신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한 패킷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에 가상폐역망을 구축하는 장치
		네 트 워 크 감 시 장 치	종업원의 자택에 설치하는 신클라이언트 단말장치 및 VPN 장치 또는 텔레 워크를 실시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된 신클라이언트 서버 및 VPN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통신 기록을 수집해, 기억장치에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새틀라이트 오피스 근무	라우터 또는 스위치	통신 프로토콜에 근거해, 전기 통신 신호를 전송해, 그 경로를 제어 또는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용의 전기 통신설비 ※ IPVPN 또는 광역 이서네트(ethernet)망으로 새틀라이트 오피스와 접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업원의 자택	신클라이언트 단말장치		신클라이언트서버와 통신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만 전자계산기로서 기능하는 단말장치(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부속의 입출력 장치(입력용 키보드 및 표시장치에 한정한다.), 통신 제어장치, 전송용 장치(무선용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전원 장치를 포함한다)
	VPN 장치		통신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한 패킷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에 가상폐역망을 구축하는 장치
새틀라이트 오피스	라우터 또는 스위치		통신 프로토콜에 근거해, 전기 통신 신호를 전송해, 그 경로를 제어 또는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용의 전기 통신설비(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집선장치를 포함한다) ※ IPVPN 또는 광역 이서네트(ethernet)망으로 텔레 워크를 행하기 위한 전기 통신설비가 설치된 회사와 접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

## 6. 독일

독일의 경우, 헤센주(Land Hessen)만이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책을 실시했다. 유럽위원회의 고정자용 구조변혁펀드로 지정되어 있는 2개 지역중 1개소에 입지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유럽위원회의 정의에 따른다. 이때 유럽위원회 정의에 의한 중소기업은 종업은 250명 미만, 매상 50백만 유로이하, 대차대조표의 합계액이 43백만 유로인 기업을 말한다. 텔레워크를 위한 인프라, 기기, 집기, 트레이닝 비용이 대상이며, 투자액의 50%가 지급된다. 단 1인당 2,500유로 한도이며, 더불어 컨설턴트 및 계획 책정 비용으로 1인당 2,500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해당 정책은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나, 컨설턴트비용에 대해서는 '0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의 50%이상을 자택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자가 집무공간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06년까지의 한시 정책, 독일 전역에서 적용 추진)한다. 다만 '07.1월 이후부터 “자택이 일을 하기위한 중심적인 장소”인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7.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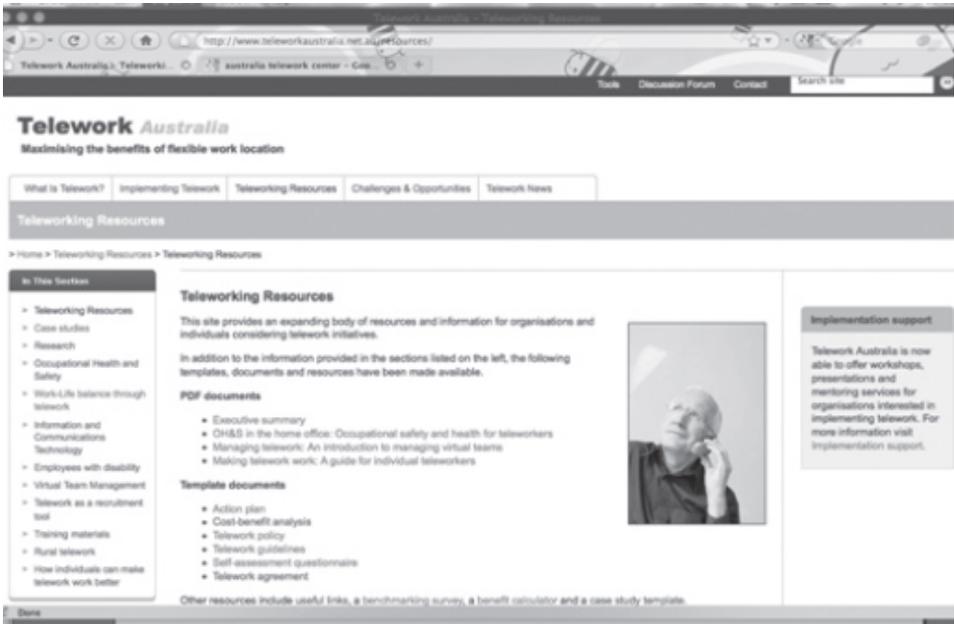
헝가리는 '15년까지 전체 노동인력 중 텔레워커 비율을 8~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텔레워크 인력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린자녀를 둔 여성, 로마와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등 특수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추진배경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텔레워크 협회와 고용위원회가 공동관리하며, HUF 130~150억불이 해당 프로젝트에 책정되었다.

## 8. 호주

호주 정부는 텔레워크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04년 호주원격근무자위원회

(Australian Telework Advisory Committee, ATAC)라는 명칭의 텔레워크 전담 기관 설립하였다. 해당위원회는 '06년 2월 27일 해체되었다. 해체직전 마지막모임에서 텔레워크에 대한 정부지원을 주장하며, '텔레워크 온라인 리소스 센터(Telework online resource centre)'가 정부후원으로 설립하였다. '텔레워크 온라인 리소스 센터(Telework online resource centre)'는 웹([www.teleworkaustralia.net.au](http://www.teleworkaustralia.net.au))을 통해 텔레워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텔레워크 근무자의 자질평가를 위한 질문지(Self-assessment questionnaire), 원격근무를 위해 필요한 정책, 원격근무에 드는 비용과 이익 대비 분석을 위한 유용한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원격근무 관련 다양한 각국의 뉴스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원격근무의 세계적 최근 동향 소개한다.

[그림 2-3] 호주 원격근무 리서치 센터 웹사이트([www.teleworkaustralia.net.au](http://www.teleworkaustralia.net.au))



## 9.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는, 25~30개의 텔레센터의 설립에 대해 199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300만오스트레일리아 달러(대략 2억 2천만엔)의 자금 제공을 승인했다.

제1차 산업·에너지성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 이것에 의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각지의 커뮤니티가 텔레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격지에 있는 커뮤니티가 통신설비나 정보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이들 커뮤니티가 고용 전망이나 상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텔레센터에는 많은 컴퓨터 기기나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온라인·데이터베이스나 원격학습 네트워크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도 연결되게 된다. 이 텔레센터의 목적은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 있어서의 교통문제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함께, 지방에 있어서의 고용 창출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제 2 절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 1.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촉진법안

#### 가.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

스마트워크가 자발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도입되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주와 근로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 및 서비스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존의 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의 중요성도 매우 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만에 의존해서는 스마트워크에 특유한 서비스와 기술을 충분히 규율하기에 미진한 점이 너무 많다. 단순히 인터넷망을 확보한다고 하여 스마트워크가 확산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를 제대로 구현하

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외에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한 솔루션을 구동하기 위한 단말기와 주변기기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각 IT업체들이 개발한 솔루션들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근로관계와 관련한 면이 많기 때문에 IT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스마트워크의 확산과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하에서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가능성만을 열어 놓았지 구체적인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까지 담고 있지는 못하다. 스마트워크는 IT와 관련되면서도 노동법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종합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담아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나. 스마트워크의 개념 및 규율대상 범위 설정의 문제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각종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원의 대상이 될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그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 바와 같이 이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스마트워크'라는 용어는 최근 스마트폰을 위시한 태블릿 PC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우리나라만의 특수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등과도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비록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새로 만들어질 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대상이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이 법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표지들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서비스나 기술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법에서 관련 산업의 어디까지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율의 내용면에서도 스마트워크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라이선스를 득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자칫 관련 산업의 규제법으로 기능할 공산이 매우 크다. 스마트워크의 확산과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관리체제 보다는 누구든지 이 분야에 들어와서 국가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 위주의 규율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포괄 문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실시는 민간부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도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국가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분야에서 일과 가정이 조화된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도 이를 단순히 민간부문에만 강요하여 새로운 규제의 틀로 몰아넣기 보다는 공공부문을 민간부분과 대등하게 스마트워크가 도입되어야 할 분야로 파악하고 새로 만들어질 법이 양 부문을 모두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공부문은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강하므로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신속하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자칫 전시행정이 되거나 면피용으로 안이한 제도운영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부문에도 스마트워크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이용실태는 생각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부문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활성화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부분의 경우는 민간부분의 특성상 자율성이 보장되는 활성화 방안이 중요하다.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이고 다양성이 없는 활성화 요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정작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는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이에 참가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주관 행정기관의 문제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확산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앞서 살펴 보았다. 문제는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의 Controll Tower의 역할을 어느 부처가 수행하느냐에 있다. 그 역할에 따라 법령입안의 주체도 달라지고 전반적인 정책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에 관련되는 관계부처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 정보통신부를 이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IT분야의 정책주도권을 쥐고 있는 핵심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로 공공분야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고, 최근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널리 공공부문에서의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워크의 문제가 참여한 근로자의 복지문제와 근로환경의 문제와 연관되는 관계로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단말기 등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찬가지로 관심을 집중하고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대비해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 부처들의 정부조직법과 직제상의 본래 업무영역과 관련한

최소한의 involve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워드는 방송과 통신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업무방식을 혁신하는데 중심이 있고 따라서 IT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 및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스마트워드의 주무기관으로는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그간 견인해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Control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스마트워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의 정책주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부문의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워치의 특징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방송통신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는 응용분야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최근 U-City, U-Health, Smart Grid, E-learning 등 다양한 응용분야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들의 공통점은 방송과 통신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방송통신이 없다면 이 분야의 지금과 같은 발전을 기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송통신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스마트워치를 위시한 방송통신의 다른 분야 접목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마. 보안 및 정보보호 문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마트워치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소중의 하나는 보안과 정보보호에 대한 불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발견사례는 2008년 429건에서 2009년 상반기 524종이 발견되는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6. 인터넷침해사고와 단말기의 보안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계속 문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물론 개인도 선뜻 스마트워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워치 이용환경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정보보호의 마인드 강화 및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의 형태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보안 솔루션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보안인증제도(Security Certificat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안인증을 받은 기업에 의한 스마트워크 실시를 보장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의 문제는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과 관련한 정보보호의 문제를 관장해왔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로 제정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보호의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등에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제도도입 및 업무참여의 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침해시 이를 구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바. 품질경쟁에 의한 자율규제적 활성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스마트워크 관련 서비스나 솔루션에 대하여 등록이나 신고 등 진입규제 방법을 통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칫 규제의 창설이 되어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지연하거나 참여에 소극적으로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즉, '관리' 보다는 '진흥'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스마트워크 업체간의 자율적인 품질경쟁을 통해 자기시정과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효용의 극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등급별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등급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전체 스마트워크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품질인증의 대상과 범위는 민간과 공공부분에 따라 달리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단말

기, 보안, 통신 및 고객센터 등)에 따라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부여받은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네트워크 고도화, 망중립성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표준화 유도

스마트시대에는 스마트폰과 테블릿 PC의 보급, 스마트TV 및 스마트 그리드의 등장 등 인터넷망에서의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워킹은 업무현장이나 이동중에 효율적 업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선망 등 네트워크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의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영상콘텐츠에 의한 화상회의 등 영상신호의 증가가 최근 망부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워킹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꾀지 않을 수 없다. 망고도화의 문제는 망사업자들의 투자여력에 달려 있는 면이 많고 법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고도화된 망에서 스마트워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망사업자 사이에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갈등 또는 트래픽 제한이나 차별화가 행해진다면 망중립성의 측면에서 사업자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여 스마트워킹 활성화의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이용과 관련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갈등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봉쇄하여 망이용의 자유와 스마트워킹 서비스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워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관련 핵심기술의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어질 것을 요한다.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함께 부여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자들이 스마트워킹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거나 별도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된 스마트워킹 관련 기술들은 서비스 이용의 호환성을 위해 표준화를

요한다.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각각의 업체가 생산한 서비스와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기기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것인데, 이들 서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간에 호환성이 없다면 국가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꾀한다는 스마트워크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정보통신분야의 입법례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스마트워크 기술 관련 표준화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새로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아. 결어

이상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과 도입장애요소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는 어느 한 경제주체만의 일도 아니고 국가만이 힘써야 하는 일도 아니다. 국가는 물론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참여하는 근로자나 공무원 모두가 당사자로서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제도의 활성화와 확산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하려는 의견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여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법령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향후 IT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IT의 다른 분야 접목과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과 기업이 상호 협력과 공조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장애요소들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입법의 형태로 법제화되어 추진될 때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목표는 100%이상 발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흔히 법제화 작업은 규제와 진흥(지원)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도입된 제도가 온전한 형태로 지원제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발휘되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체질에 맞

는 한국형 스마트워크 표준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2.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설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제정하였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는 안전한 스마트워크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스마트워크 유형을 고려한 기능별·구성요소별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요, 제정취지, 주요내용, 관련법 정책 등의 내용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한 권고 해설서를 마련하고, 이를 관련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하였다.

## 제 3 절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제고방안 연구

본 절에서는 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을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 저변확대를 위한 CEO/관리자/근로자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스마트워크 홍보

스마트워크 추진은 저출산·고령화 국가현안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IT 기반 정책이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워크 보급률은 저조하여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스마트워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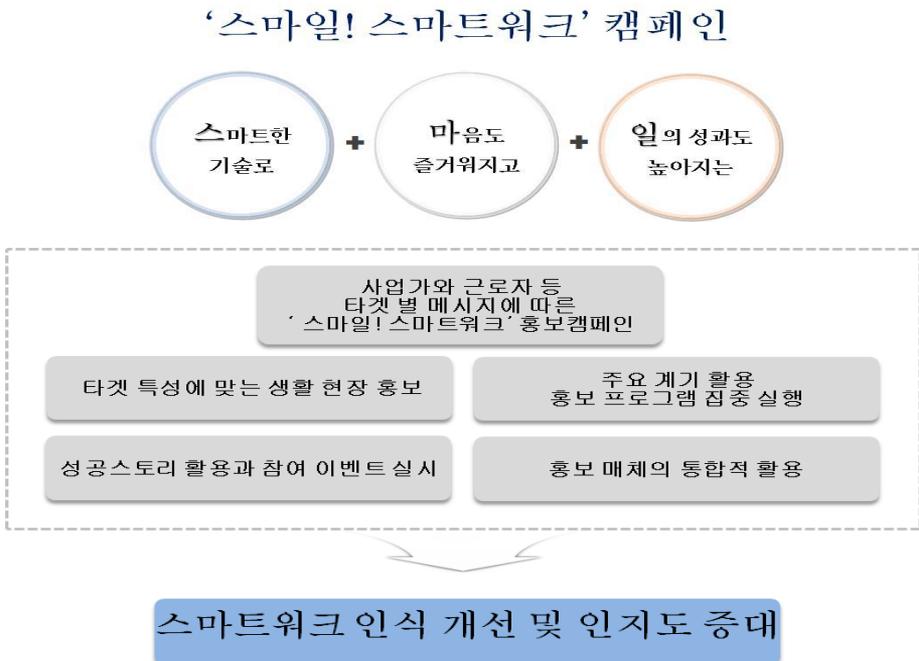
등 현재 스마트워크 도입 한계를 넘어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경영진·근로자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해보인다.

스마트워크 홍보는 ‘스마트워크’가 주는 가치와 그 가치의 정책연관성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로써 일반국민들에게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공감적이고 감성적인 이해를, 이해관계자에게는 체감적인 참여적인 컨센트를 도출해야한다.

가. ‘스마일! 스마트워크’ 홍보추진 전략

스마트워크는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일함으로써 나의 여유시간이 늘어나 마음이 즐겁고 일할 맛이 있어 일의 성과가 높아지는 나와 가족, 사회 모두가 스마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근무문화’라는 컨셉트의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림 2-4] “스마일! 스마트워크“ 홍보캠페인



목표타겟은 사업 경영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으로 하며, 목표타겟의 성격과 미디어 이용태도에 따라 전달 메시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언론홍보캠페인은 인지(1단계, '11~'12년), 공감(2단계, '12~'14년), 참여(3단계, '14~'15년), 확산(4단계, '15년~) 단계로 진행한다. 특히 기업타겟의 홍보캠페인은 개별기업, 경제단체, 민간캠페인, 경제포럼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개인 및 가족/사회 타겟의 홍보캠페인은 삶의 질 향상 및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워크에 대한 공감적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 세부타겟별 홍보매체는 다음과 같다.

〈표 2-7〉 대상별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주요 타겟	세부 타겟	생활 접점	가용 홍보매체
사업자	중소기업 사용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회 관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TV방송, 라디오방송</li> <li>•인터넷 경제-시사 뉴스</li> <li>•각종 기업인 협회 특강,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li> <li>•이슈리포트, 업계전문지, 시사경제 매거진</li> </ul>
	중견기업 경영진	포럼 및 경제단체 행사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업종별 협회 행사, 시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동종업종 밀집지역,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가지, 인터넷뉴스, 신문, 방송</li> <li>•SNS, 스마트폰 앱</li> <li>•직장 주변 및 도심가 체험 이벤트</li> <li>•대중교통 광고</li> </ul>
	중견기업 근로자	도심 중심가, 지하철, 대중교통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도심 및 밀집 지역, 자가용, 대중교통	
	대기업 근로자	도심 중심가, 대중교통	
일반 국민	3050 세대	신문, 방송, 인터넷, SNS,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방송, 인터넷, 주간지</li> <li>•시사경제지, 업계전문지, 월간지</li> <li>•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앱</li> <li>•온 오프라인 이벤트</li> </ul>
	5060 세대	신문, 방송	
	2030 세대	인터넷, SNS, 스마트폰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홍보와 더불어, 최근 젊은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SNS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언론사와 연계한 주기적 홍보 및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

#### 나. 대상별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 중소·중견기업 경영진 대상

- 경제주간지와 연계, 스마트워크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연속보도를 통한 경영진 인식변화 유도
- 실제 스마트워크 기업사례를 소개하는 TV방송 기획프로그램을 편성, 스마트워크의 장점 및 성과를 상세히 소개
- 주요 시사/경제 주간지와 연계, 정부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스마트워크 추진정책 소개
- Third Party 활요의 신문기고 게재를 통해 스마트워크 도입필요성 환기
- 스마트워크 데이 등 주요정책 및 프로모션 시행계획을 활용, 관련 행사 추진시 보도자료 배포
- 해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워크정책 및 현황을 소개하는 E-Book, 이슈리포트 등 발간
- 스마트워크 확산 및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스마트워크 특강, 정책 설명회 등 사회 전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개최
- 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컨퍼런스 정기개최 및 스마트워크 리더 선정
- CEO대상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탐방 팸투어 개최

○ 근로자 대상

- TV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관점에서 스마트워크 장점 소개
- 다큐 및 교양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워크 근로문화 소개 등 TV 기획방송 추진
- 무가지를 활용, 스마트워크 시리즈 기획기사 배포
- 나의 '스마일워크데이'를 간편하게 알릴수 있게 디자인된 '스마트워크' 요일제 배지제작 배포
- 나의 '스마트워크 데이'가 표시된 명함제작
- '스마일, 스마트워크' 홍보캠페인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 대국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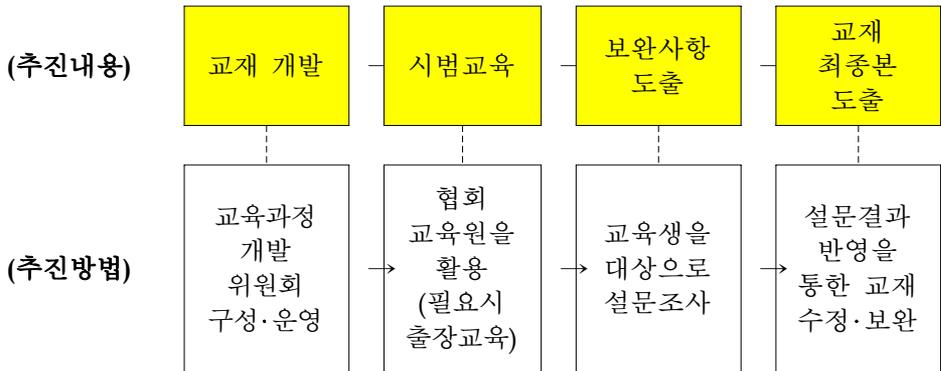
- '스마일, 스마트워크'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오픈 및 운영
- 스마트워크 근로문화 및 홍보캠페인 활동 콘텐츠를 생성해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스마일! 스마트워크 서포터즈' 운영
- 스마트워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카툰 제작 및 배포

- 스마트워크 체험존 운영을 통한 스마트워크 대국민 인지
- 스마트폰 QR코드 이벤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
- 스마트워크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활용
- 스마트워크 뉴스레터 제작·배포
- 여론조사

## 2.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모 및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해 CEO 등 대상별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적용한다.

[그림 2-5]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육 추진 개요



### ○ 스마트워크 교육대상

- 스마트워크 도입을 검토중인 기업의 CEO/관리자/근로자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모 및 정보제공을 위한 3종의 맞춤형 스마트워크교재 개발
- 이를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자문 회의개최 및 전문가활용을 통해 교재 마련

○ 대상별 중점 교육내용

- 스마트워크에 대한 일반적 이해 및 긍정적 효과, 정부 추진정책 등 기본 교육과정은 포함하되, 교육대상별 교육방향 및 내용 특성화

〈표 2-8〉 대상별 스마트워크 교육방향 및 내용

교육 대상	교육방향	세부내용
CEO	스마트워크 부정적 인식 개선	0 스마트워크 촉진법 등 관련 제·규정 0 국내외 우수 스마트워크 사례 소개
관리자	스마트워크 도입 및 운용·관리 스킬 습득	0 스마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역할, 절차 0 스마트워크 도입 운용 가이드라인 0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근로자	스마트워크 근로자로서의 의무 및 역할, 업무프로세스	0 스마트워크 근로자 의무 및 역할 업무절차 0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근로취약계층	스마트워크 활용을 위한 기초 IT기술 습득 및 실습	0 스마트워크 활용관련 IT기술 습득 0 해외 근로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활용 사례 소개
기본 교육과정		0 스마트워크에 대한 일반적 이해 및 긍정적 효과 0 관련 정부부처 추진정책 및 제도 소개

○ 대상별 교육방법

- (CEO) 집체교육이 어려운 CEO 특성을 고려하여, 출장교육실시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중소기업청 CEO교육과정 등 CEO 교육이 용이한 과정을 발굴,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강형식으로 추진
- (관리자/근로자) 스마트워크 교육과정 편성이 용이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 3. 스마트워크 홍보 및 교육 시범적용

#### 가. 스마트워크 정책 홍보동영상 제작 및 시범상영

본 연구에서는 홍보를 위해 홍보대상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스마트워크 홍보동영상’을 시범제작하고,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행사개최시 상영하였다. 실제로 ‘11.12월 방통위가 주최한 “Smart! Work & Society 2011” 컨퍼런스 행사시 상영, 컨퍼런스 참가자(400명 참석)를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정책홍보를 실시한바 있다.

#### 나. 맞춤형 스마트워크 시범교육

스마트워크 이해도모 및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CEO,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재 시범교육을 3회 실시했다. 실시한 시범교육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9〉 스마트워크 맞춤형 시범교육 추진개요

교육대상	교육일시/장소	교육내용
공무원, 근로자	2011.11.11, RAPA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기본개념</li> <li>○ 스마트워크 심화(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업무환경구축 및 활용</li> <li>- 스마트워크 보안지침</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위한 Q&amp;A</li> </ul> </li> </ul>
관리자	2011.12.15, CJ헬로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기본개념</li> <li>○ 스마트워크 심화(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관리/성과평가/책임</li> <li>- 스마트워크의 업무지시 및 전달/보고 방법</li> <li>-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li> </ul> </li> </ul>
CEO	2011. 11. 24., 단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기본개념</li> <li>○ 스마트워크 심화(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도입제도 및 규칙마련</li> <li>-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위험</li> <li>-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Q&amp;A</li> </ul> </li> </ul>

[그림 2-6] 스마트워크 시범교육 현장



스마트워크 교육 설문조사결과, 교육대상의 48%가 스마트워크를 경험해본적이 있으며, 79%가 스마트워크에 대해 호감(보통이상 답변)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89%가 스마트워크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보통이상 답변)이라고 답변했으며, 스마트워크 교재의 이해정도 및 만족도는 각각 89%와 95%로 스마트워크 교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았다. 교육 전/후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향상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98%가 보통이상으로 답변하였다.

〈표 2-10〉 스마트워크 교육대상

근무형태	대기업	중소기업	개업사업	관공서	군부대	교육기관	기타
		31%	8%	2%	28%	-	13%
직위	CEO	관리자	근로자	기타			
	11%	23%	46%	20%			
근속기간	1년 이하	1-3년	3-5년	5-7년	7년 이상		
	5%	18%	10%	11%	56%		
성별	남자	여자					
	62%	38%					
스마트워크 경험유무	예	아니오					
	48%	52%					

〈표 2-11〉 스마트워크 교육 효과

구분	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스마트워크 호감도	3%	8%	10%	28%	10%	30%	11%
스마트워크를 통한 삶의 질개선편여	-	-	5%	10%	34%	38%	13%
교육 이해	-	2%	10%	30%	20%	34%	5%
교재만족도	-	2%	-	16%	28%	49%	5%
교육 전/후 교육이해 향상정도	5	2%	-	8%	33%	52%	5%

## 제 4 절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본 절에서는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이라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비전달성을 위한 조치로써,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성과지표개발 및 활성화추진방안,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별 중장기 추진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개요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직종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인한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 여건 성숙 및 국가적/사회 현안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 2010년 3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10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스마트코리아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설정하였다. 이에 2015년까지 근로자의 30%를 스마트워크에 종사하게 한다는 최종 목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지표 및 추진목표 대비 달성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측정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과측정 지표를 통해 매년 연도별 목표치 달성도를 확인하고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로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낮은 인지도, 신뢰성으로 홍보 및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 시장의 대부분을 외산 장비가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이다.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에서 외산 장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듯 스마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 2. 성과 지표개발 및 활성화 촉진

본 절에서는 최종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먼저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 및 참여기업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상세 정의된 개념에 따라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 기업과 참여 근로자수를 추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국내 현황

스마트워크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활동들을 정해진 근무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 IC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연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포괄해서 전국 단위로 실시된 사업체 조사는 부재하고 부분적 개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재택/가내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정보화통계조사」에서 사업체 원격근무 도입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표 2-12〉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실태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대상 및 주기	주관기관	조사 분류 기준	변수 속성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	근로자1인 이상 사업체 중 37,000개 표본사업체	고용노동부	- 재택근로자 - 파견근로자 - 용역근로자	- Place - Task - Time

조사	/매년		- 단시간 근로자	
사업체 패널조사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1,500개 사업체 패널/각년	노동연구원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교대근무제	- Time
사업체 임금근로 시간 부기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중 7,208개 표본 사업체 /2008년 2/4분기	고용노동부	<07년 기준> - 탄력적 근무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교대근로제 <08년 기준> - 원격 및 재택근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집중근로시간제 - 직무공유 -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등	- Time - Place - Task
여성관리 자 패널조사	100인 이상 영리기업(제조업 금융/보험/증권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의 인사 담당자 및 대리급 이상의 여성 및 남성 관리자/각년	여성부 수 탁과제로 여성정책 연구원에 서 수행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택근무제	- Time - Place
일과 가족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조사	전국 10인이상 1,084개 사업체 인사담당자 /2007년	고용노동부	- 기업의 특성에 따른 유연근 로제도 실태와 수용성 조사	- Job - Task

- 1) 선택적 근로시간제 : '8 to 5 또는 9 to 6 또는 10 to 7' 등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통계 조사 및 분류 기준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주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요소들이 분류에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Time(시간)과 관련한 변수 : 일일 근무시간(8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차를 자유롭게 정하는 경우, 주당 총 근무시간(40시간)을 자유롭게 채우는 경우
- Place(장소) : 사무실이 아닌 집, 또는 다른 장소

#### 나. 국외 현황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에 따라, 텔레워크(또는 텔레워킹)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활동을 기존의 업무공간이 아닌 새롭게 승인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최소 “주 1회 이상”의 “정기적 근무”를 텔레워크로 인정하며, 프로젝트 업무와 한시적·일시적 근무는 텔레워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6%의 정부기관이 텔레워크 규정(Telework policy)을 도입하였으며, 약 84%가 원격근무 관리자(Telework Managing Officers)직을 설치, 해당인력에 대한 충원을 실시했다. 또한 78%의 기관이 텔레워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과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텔레워크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대부분 40대 남성들이며, 원격근무처로 자택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어 지고 있다

영국의 텔레워커 정의는 ‘97년 영국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 LFS)에서의 정의가 학술연구나 사회통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LFS의 정의에 따르면, 텔레워크 근무자는 ‘자신의 집에서 유급 혹은 무급의 일을 하며, 전화기와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주로 집에서 주업을 하는 사람들(‘Teleworker homeworkers’), 다양한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집을 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들(‘Home-based teleworks’), 주로 집에서 일하거나, 집을 근거지로 사용하지 않지만, 조사기간 동안 적어도 하루 이상 집에서 일했던 사람(‘Occasional teleworkers’)가 포함된다. LFS의 정의는 텔레워커를 집에서 상당시간 일하는 사람

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텔레워크나 'e-work<sup>3)</sup>'가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LFS 통계자료에 의하면 '93년 전체 노동력의 0.5%(약 13만 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0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성장을 보여 '97~'01년 동안 텔레워커 규모가 연 65~70% 증가했다. LFS 통계상, '07년 약 320만 명이 주로 집에서 일하거나, 집을 근거지로 활용하며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홈워커 가운데 250만 명이 집에서 일하기 위해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한 텔레워커였다.

〈표 2-13〉 영국 텔레워커 수

(단위 : 백만)

년도	1997	2001	2005	2007
텔레워커 수	0.9m	2.2m	2.4m	2.5m
전체노동력에서 텔레워커가 차지하는 비율	4%	7.4%	8.5%	8.9%

텔레워커를 살펴보면, 남성이 2/3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스로 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의 비율이 피고용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텔레워커들은 공적영역보다 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전문직, 관리자, 상급공무원, 기술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 e-work : 텔레워크 센터를 기반으로 한 텔레워크, 집을 근거지로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워크, 근무지가 유연한 텔레워크 등을 말함

〈표 2-14〉 성별, 고용상태별 텔레워커 비율

		전체고용률		텔레워커	
		2005	2007	2005	2007
성별	남자	53%	54%	65%	64%
	여자	47%	46%	35%	36%
고용형태	고용인	87%	87%	36%	37%
	자영업	13%	13%	62%	61%
	무급가족노동	0%	0%	-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 (ONS), Parker (2008)과 Hotopp (2002)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일본에서 통용되는 텔레워커 정의는 국토교통성의 텔레워커 인구조사 자료를 따른다. 국토교통성의 텔레워커 인구조사에 의하면, 텔레워커는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T)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일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텔레워커는 보통 수입을 수반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 중, 일로 IT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속해 있는 사무실 이외에 IT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당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의의 텔레워커는 보통 수입을 수반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 중에서, IT를 활용하여 사무실이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자영업자를 말한다. 국토교통성의 텔레워커 인구조사는 단지 상기 정의(주당 8시간 이상, IT활용 업무) 부합여부만을 판단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아래, 주 1일이라도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과 “출장처에서 주 8시간(합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도 텔레워커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주 8시간 이상 자택에 업무를 가지고 돌아가 잔업을 실시하면 텔레워커로 구분한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고용되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고용형과, SOHO 등의 자영업형(또는 비고용형)으로 구분한다.

〈표 2-15〉 고용형태별 분류

구분		내용
고용형	재택근무	주당 얼마의 시간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실시
	모바일워크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영업처를 돌면서 노트북PC등을 활용하여 업무
비고용형	SOHO	개인 사업주,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
	재택업무형	개인이 텔레워크 알선회사에 등록되어, 데이터입력이나 주소수집, 홈페이지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이 낮아 “컴퓨터를 활용한 부업”으로 생각되는 형태

※ 총무성에서는 위의 내용에 덧붙여, 시설이용형 근무(위성 사무실, 텔레워크 센터, spot office등을 취업 장소로 하는 것) 정의

실제로 일본의 텔레워크 조사방법 및 결과를 살펴보겠다. '00년 일본의 텔레워크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로 구분하여 텔레워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 조사대상의 경우, 일본 총무청의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보고서」 자료(상장사)와 테이코쿠 데이터 뱅크의COSMOS2(비상장사)참고하여, 도시별·종업원 규모별의 사업소수의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한다. 또한 근로자 조사는 기업조사에 응한 기업에 대해, 종업원 규모에 따라 근로자 조사 대상수를 결정하고 기업단위로 조사를 의뢰한다.

〈표 2-16〉 일본의 텔레워크 실태조사 개요('00년)

구분	조사내용
기업조사	기업규모별 텔레워크의 실시 상황, 텔레워크의 실태(실시부문, 텔레워크 커 수, 이용시설현황, 텔레워크 업무 장소),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목적과 효과, 텔레워크 미실시 이유(해당기업에 한함), 5년 후의 텔레워크 실시계획
근로자 조사	텔레워크의 실시 상황, 텔레워크의 구체적 내용(텔레 워크의 장소·실시 횟수·실시 시간·빈도, 이용시설, 업무내용, 텔레워크의 장·단점, 텔레워크 미실시 이유(해당근로자에 한함))

일본정부는 “e-Japan 전략 II(‘03.7월)”에 의해 2010년 일본 노동인구의 20%(약 1,400만 명)을 텔레워커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스마트워크 관련 통계조사는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기업의 표본사업장 사업주 6,66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텔레워크 실태조사」,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재량근로제와 노동시간관리에 관한조사」 등이 있다. 실제로 ‘08년 국교성의 텔레워크 인구조사에 의하면, 일본 텔레워크 인구는 노동인구의 15.2%로 조사된바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국단위로 유연근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회원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 시간 및 일 삶의 조화에 대한 사업체 조사(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를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 연장근로시간, 시간제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전화조사)한다.

이와 같이 해외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외의 경우 전화조사, 면접조사, 또는 패널조사 등 다양한 실태조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있었다. 전수조사의 경우 매5년, 패널조사 등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매해 주기적으로 근무형태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과 삶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시간의 유연성, 재택근무, 기업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관련 통계와 기존 문헌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준들을 수집·분석해 각 산업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분류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 다. 성과 지표 정의 및 도출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마트워크 성과지표로써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의 및 도출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표 2-17〉 스마트워크 근로자 정의

구분	스마트워크 근로자 정의
좁은 의미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스마트 ICT를 활용하여 스마트오피스, 워크센터, 재택 또는 모바일 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
넓은 의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출퇴근 장소에 제한이 없이 스마트 IC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스마트워크 근로자 정의에 따라, 스마트워크 참여기업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ICT 시설을 갖추고 규정에 상기에 언급된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가 하나라도 명시되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각 단계별 스마트워크형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임원과 관리자를 제외하고 한명이라도 있는 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스마트워크 발전 단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마트워크 발전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표 2-18〉 시간과 장소 기준 프레임워크

Time	재량근무제 (anytime)	일반근로	2 단계	2 단계	2 단계	2 단계	3 단계
	유연근무제 /선택시차제	일반근로	1 단계	1 단계	1 단계	1 단계	2 단계
	고정근무제	일반근로	기초	1 단계	1 단계	1 단계	2 단계
	구분	일반 사무실 근무	스마트 오피스 근무	워크센터 근무	재택 근무	이동형 근무	필요장소 재량근무 (anywhere)
Place							

- (기초 단계) 스마트ICT를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설치
- (1단계) 정해진 특정 원격 장소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이 고정, 선택, 유연 제도로 제한이 있고 기록이 되는 근무형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 (2단계) 정해진 근무 장소 없이 매일 또는 수시로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재량 시간 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 (수시로 이동하면서 정해진 시간 만큼)
- (3단계 : 이상적인 미래 지식정보사회 근로의 모습) 어디에 있거나 스마트ICT를 활용하여 강제적인 시간 기록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앞서 정의된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와 참여기업에 관한 통계치 산정을 위하여 스마트워크 정의 및 발달단계, 해외 주요국가의 통계 기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항목을 개발한다. 먼저 스마트워크 정의에 따라 스마트워크는 그 장소와 시간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측정하며, 반드시 ICT의 활용여부를 측정하여 일반 근로와 스마트워크를 구분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측정하며, 다양한 ICT 기기 및 환경 제공여부 등 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조사 및 영향력 분석이 가능하다. 기업 고용 인력 외에도 전문직 프리랜서와 같이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인력이 존재함.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병행하여 만16세 이상 가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의 경우, 참여 근로자의 특성, 훈련 방법, 구체적인 근로 시간 및 장소, 이용 ICT의 종류 및 빈도, 스마트워크 환경 및 참여유인, 근무성과 및 보수 등 구체적인 근로자의 특성 및 스마트워크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조사체계를 따르면, 조사 대상을 세분화 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내 조사 체계에서도 기업과 개인근로자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실효

성있는 조사결과 도출 및 성과분석이 가능해보인다.

○ 기업대상 설문(안)

(1) 시간 기준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운영 여부

- ① 선택시차제(출퇴근 시간 선택)
- ② 유연근무제(주/월/년당 근로 시간 계약)
- ③ 재량근무제(성과중심 근로계약)
- ④ 업무 분담제(Job Sharing)
- ⑤ 해당 사항 없음
- ⑥ 기타 유연 시간 근무제( )

(2) 기업에서 제공하는 업무 장소

- ① 일반 사무실
- ② 스마트 오피스
- ③ 워크 센터
- ④ 재택
- ⑤ 이동형 근무
- ⑥ 기타 장소 ( )

(3)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 수(최근 1년 기준)

(명)

업무 특성별 근로장소별	기획/총괄	연구/심사	홍보/마케팅	...
스마트워크센터				
재택				
...				

(4) 최근 원활한 스마트워크를 위해 구축한 환경

(4-1) 스마트 디바이스

- ① 최신 데스크탑
- ② 무선 인터넷 기반 노트북
- ③ 스마트 폰/스마트패드
- ④ 기타( )

(4-2) 네트워크 등 스마트 근무 환경

- ① 사내 전용 인터넷망
- ② 화상회의 전용 회의실
- ③ 독립적인 업무 공간
- ④ 스마트워크 센터
- ⑤ 기타( )

(5)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업무

- ① 기획/총괄
- ② 연구/심사
- ③ 홍보/마케팅
- ④ 운영/지원
- ⑤ 조사/단속
- ⑥ 감사
- ⑦ 대민서비스
- ⑧ 기타( )

(6) 스마트워크 참여 이유

- ① 업무 효율 등 업무 성과 증대
- ② 비용 감소, 고객 만족 향상 등 생산성 증대
- ③ 근로자 요구
- ④ 정부 등 사회적 요구
- ⑤ 기타( )

(7) 스마트워크 미참여 이유

- ① 근로자 참여율 저조
- ② 성과평가 곤란
- ③ 문화적 인식 저조
- ④ 업무 특성
- ⑤ 기타( )

(8)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참여 의사 (Y/N)

○ 근로자대상 설문(안)

(1)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참여 여부

- ① 선택시차제(출퇴근 시간 선택)
- ② 유연근무제(주/월/년당 근로 시간 계약)
- ③ 재량근무제(성과중심 근로계약)
- ④ 업무 분담제(Job Sharing)
- ⑤ 해당 사항 없음
- ⑥ 기타 시간 유연 근무제( )

(2) 업무 장소 및 근무 시간

(2-1) 주 업무 장소

- ① 일반 사무실
- ② 스마트 오피스
- ③ 워크 센터
- ④ 재택
- ⑤ 이동형 근무
- ⑥ 기타 장소 ( )

(2-2) 주 업무 장소 근무 시간(주 40시간 기준, 시간 단위로 기재)

(2-3) 주 업무 장소 외 업무 장소

- ① 일반 사무실
- ② 스마트 오피스
- ③ 워크 센터
- ④ 재택
- ⑤ 이동형 근무
- ⑥ 기타 장소 ( )

(2-4) 주 근무 장소 외 업무 장소 근무 시간(주 40시간 기준, 시간 단위로 기재)

(3) 스마트워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ICT 기술

- ① e-mail
- ② 메신저
- ③ 음성/화상 회의
- ④ 파일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등)
- ⑤ 전화/fax
- ⑥ 기타( )

(4) 스마트워크로 수행하는 업무

- ① 기획/총괄
- ② 연구/심사
- ③ 홍보/마케팅
- ④ 운영/지원
- ⑤ 조사/단속
- ⑥ 감사
- ⑦ 대민서비스
- ⑧ 기타(본인 업무에 관한 Demographics 기입)

(5) 스마트워크 참여 이유

(5-1)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 개인적 이유

- ① 업무 효율
- ② 출퇴근 시간/비용 절감
- ③ 육아
- ④ 학업
- ⑤ 노부모 봉양
- ⑥ 건강
- ⑦ 장애
- ⑧ 기타( )

(5-2) 스마트워크 참여 조직적 이유

- ① 인사 제도상 혜택(승진 가산점 등)
- ② 경제적 혜택(복지/급여 혜택)

- ③ 조직 문화의 자율성
- ④ 주변 인식 제고(전문가 인정 등)
- ⑤ 기타(            )

(6) 스마트워크 미참여 이유

- ① 제도 부재
- ② 비협조적인 가족
- ③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 부재
- ④ 부정적인 조직 문화
- ⑤ 관리자급의 불신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
- ⑥ 복지혜택 및 급여 감소
- ⑦ 업무 특성상 스마트워크 불가(업무 특성 :            )
- ⑧ 컴퓨터,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환경 스마트워크 환경 불충분
- ⑨ 주변 이웃의 부정적 인식 우려
- ⑩ 기타(            )

(7)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참여 의사 (Y/N)

○ 기술조사(개인)

각각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유형별(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오피스) 기술·기능 요구 사항 조사

<재택근무>

(1) 재택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가정 내 업무 환경 및 분위기
- ② 안정적인 네트워크
- ③ 데이터 보안 환경
- ④ 업무용 장비 환경
- ⑤ 기타(            )

(2) 가정 내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가정 내에서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 통화 및 영상통화 기능
- ② 다자간 협의를 위한 화상 회의 기능
- ③ 회사 전자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직원 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기능
- ④ 문서 공유 등을 위한 협업툴
- 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 ⑥ 기타( )

(3)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유선전화
- ② 인터넷 회선
- ③ FMC
- ④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
- ⑤ 기타( )

(4) 업무용 장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업무용 단말 장치(PC, 모니터, IPTV, 팩스, 프린터, 스캐너 등)
- ② 스피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 ③ 주부, 노약자, 장애인용 맞춤형 UI/UX
- ④ 기타( )

<스마트워크 센터>

(5)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실감형 업무 및 공동 작업 환경
- ② 안정적인 네트워크
- ③ 데이터 보안 환경
- ④ 업무용 장비 환경
- ⑤ 기타( )

(6) 실감형 업무 및 공동 작업 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 회의
- ② 다자간 협의를 위한 화상 회의 기능
- ③ 개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통화 및 영상 통화
- ④ 회사 전자 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직원 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기능
- 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 ⑥ 기타(                    )

(7)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유선전화
- ② 인터넷 회선
- ③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
- ④ 기타(                    )

(8) 업무용 장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업무용 단말 장치(PC, 모니터, IPTV, 팩스, 프린터, 스캐너 등)
- ② 스피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 ③ 주부, 노약자, 장애인용 맞춤형 UI/UX
- ④ 기타(                    )

<모바일오피스>

(9) 모바일 오피스를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이동환경에 필요한 업무 작업 환경
- ② 무선 네트워크 환경
- ③ 데이터 보안 환경
- ④ 모바일 단말 장비 환경
- ⑤ 기타(                    )

(10) 이동환경에 필요한 업무 작업 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회사 전자 메일, 게시판, 전자결제, 직원 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기능
- ② 회사 업무용 응용 애플리케이션
- ③ 개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통화 및 영상 통화
- ④ 회사와 외부에서의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단일화된 저장 기능
- ⑤ 기타(                    )

(11) 모바일 오피스를 위해 사용하는 단말 장비는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

- 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 ② 노트북
- ③ 태블릿 PC
- ④ PDA
- ⑤ 기타(                    )

(12) 모바일 오피스를 위한 단말 장비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복수 응답 가능)

- ① 모바일용 UI/UX의 개선 및 발달
- ②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 ③ 무선 환경에서의 통신 및 데이터 보안
- ④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
- ⑤ 노트북의 이동성 증가
- ⑥ 기타(                    )

스마트워크 중점 추진이 가능한 직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흡수역량 정도를 분석하여 흡수역량이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서 스마트워크 흡수역량은 업무 특성이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스마트워크 흡수 역량이 높을수록 스마트워크를 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라.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먼저 스마트워크 민간 스마트워크 참여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관련 제도 및 규정 확립 등 기업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모범 사례를 통해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고령인 등 근로 취약계층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워크 환경 기반의 스마트워크 취업업무를 개발하고, 해당 취업대상에 대해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IT기기 대여 지원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및 시설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육아여성을 위한 학교 밀집 지역 근처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 출산, 조기은퇴, 비정규직 등 비자발적 실업자의 스마트워크 취업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학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실업에 처한 취업희망군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업정보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스마트워크 참여를 유도한다.

스마트워크 참여기업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1인 기업 및 소규모 창업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참여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 1인 기업 및 소규모 창업자가 스마트워크 도입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테크샵(Techshop)처럼 사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 및 교육,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컨설

팅을 제공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추진이 효과적이다. 테크 샵은 회원제를 기반으로 한 워크샵의 일종으로 회원들에게 고가의 도구, 장비 및 교육, 관련 업종의 전문가와의 커뮤니티 제공,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물리적 장비 클라우드와 커뮤니티를 결합한 형태의 일종의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개인이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와 전문가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 장년층, 전문직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1인 기업에게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스마트워크 일자리 창출기업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 규제를 두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비용 또는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텔레워크 환경정비 세제)처럼, 일정 수 이상의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스마트워크 참여 경쟁 유도도 가능하다.

스마트워크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외에도,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해 매스미디어, 인터넷포털, SNS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워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일례로 스마트워크 캠페인 송 및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 스마트워크 관련 웹사이트 오픈·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 유도할 수 있다. 또 접근성이 높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장관과 국민간의 대화의 장까지 마련하고 있다.

-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또는 로드쇼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스마트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장 마련

- 대중교통에 스마트워크 테마를 적용하여 운행,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시간대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스마트워크 테마를 설치하여 홍보
- Telework Day, Money Tree, Town Hall Meeting, European Telework Week,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실천캠페인을 모티브로 한 범국민 스마트워크 실천캠페인 및 문화행사 개최 추진
- 각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워크 추진 캠페인 및 문화 행사 개최, 관광특구에 맞는 스마트워크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스마트워크 앱 경진대회,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원들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 유도
- 미래 스마트워크 수요자를 위해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e-learning 실시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CEO들에게 스마트워크 효과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사례 홍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인센티브 제도 홍보
- 각 산업협회 주관으로 회원사 인사담당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문화 운동 전개 및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의 시범사업과 우수기업 사례를 통한 스마트워크 가이드북 제작 보급 (스마트워크 도입방안/운용/인사노무 등)
- 스마트워크 실시 Know-how를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전수 및 컨설팅 지원
- 스마트워크의 자생적인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시점까지(2015년) 사용자,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 업체, 통신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또는 개발 지원 사업 실시
- 스마트워크에 특화된 컨설턴트 전문가를 육성하여 중소기업 등에 파견해 스마트워크 도입방안 제시 및 멘토링 역할 제공
- 스마트워크의 자생적인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 비용 부담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제휴 PC방 지정

〈표 2-19〉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구분	추진 목표	세부추진목표
스마트워크 참여근로자 확대	근로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개발 및 지원 비자발적 실업자의 스마트워크 취업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장애인, 고령인 등 근로 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활용모델 발굴 및 취업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환경지원</li> <li>○ 근로취약계층이 공동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 센터 및 시설 구축비용 지원, 육아여성을 위한 학교 밀집지역 근처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 지원</li> <li>○ 고학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실업에 처한 취업희망군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li> </ul>
스마트워크 참여기업 확대	1인 기업 및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스마트워크 도입·참여 지원 스마트워크 확산 일자리 창출기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기업 및 소규모 창업자가 스마트워크 도입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테크샵처럼 사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 및 교육,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 지원</li> <li>○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 규제를 두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비용 또는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li> </ul>
인식제고 및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스미디어, 인터넷 포털, SNS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워크에 대한 대국민 홍보</li> <li>○ 접근성이 높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워크 홍보 및 우수사례 홍보</li> <li>○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및 로드쇼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스마트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장 마련</li> <li>○ 대중교통에 스마트워크 테마를 적용하여 운행</li> </ul>

68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p>범국민 차원에서의 스마트워크 실천 캠페인 및 문화 행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으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스마트워크 참여 유도</li> <li>○ 기업 단체 등이 참가하여 스마트워크 추진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스마트워크 행사 개최</li> <li>○ 각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워크 추진 캠페인 및 문화 행사 개최</li> <li>○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개최</li> <li>○ 미래 스마트워크 수요자를 위해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실시</li> <li>○ 실감형 텔레프레즌스를 활용한 범국민 스마트워크 홍보</li> </ul>
	<p>부정적 인식 개선에 위한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CEO들에게 스마트워크 효과에 대한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li> <li>○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인센티브 제도 홍보</li> </ul>
<p>스마트워크 인식개선 교육</p>	<p>정부 대상 교육</p> <p>산업계 대상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문화운동 전개 및 교육</li> <li>○ 각 산업협회 주관으로 회원사 인사담당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문화 운동 전개 및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li> </ul>
<p>스마트워크 컨설팅 지원</p>	<p>Know-how 전수 및 컨설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워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시범사업에 활용된 장비 대여 및 기화보된 Know-how를 관련 민간기업에 전파</li> </ul>
<p>기타활성화 방안</p>	<p>스마트워크 센터 활성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 비용 부담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제휴 PC방 지정</li> </ul>

### 3. 스마트워크 기술개발 및 표준화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시장의 대부분은 외산장비가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 확보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이다. 국내 스마트워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에서 외산 장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그리고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술 및 서비스간 상호호환성 문제이다. 국내 많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장비 간 상호호환성 확보가 미흡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정립을 위한 표준화 대상 항목을 도출하고, 산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쉬운 자료공유 및 저가의 범국민적인 통합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트리(Technology Tree)를 분류하고, 쉬운 자료공유 및 저가의 범국민적인 통합형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발, 스마트워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계획에 대해 연구한다.

#### 가. 해외 사례

-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스마트워크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솔루션 제품이 강화되고 있음
  - 시스코는 2009년 10월 텐더버그 인수를 발표 후, 2010년 4월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제품라인을 확장(화상회의)하여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텔레프레즌스 시장 확대 도모
  - 폴리콤은 2010년 1월 주니퍼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텔레프레즌스 및 화상회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품 개발

○ 주요 기업의 스마트워크 관련 솔루션 개발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명	기능
Exchange2010, exchange server 2010(on premise), exchange online(클라우드 솔루션)	메시징, 음성메일, 통합메시징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및 2007 R2	전화통신
office communicator 2007 R2(on premise) office communicator online (클라우드)	인스턴트 메시징 및 상태정보

2) 어바야(Avaya)

제품명	기능
Avaya Aura <sup>®</sup> Conferencing	실시간 컨퍼런스와 협업
Avaya one-X <sup>®</sup> Communicator	UC 클라이언트로 사용자 편리한 환경제공
Avaya one-X <sup>®</sup> Mobile	모바일단말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Meeting Exchange	집에서 사용하는 협업 툴
Mobility and End User Clients	통신 응용 및 협업 툴
Unified Messaging	자동응답기능, 보이스 메시징, speech capabilities
UC용 서버	Avaya 통신제품에 필요한 연산능력을 제공하며, 신뢰성이 있고 확장 가능함
게이트웨이	인터넷전화를 위한 미디어게이트웨이 기능 구현
Communication server 1000, 2100	기업을 위한 확장 가능한 IP분배 통신시스템 통합 솔루션
1000 시리즈 비디오컨퍼런싱 시스템	고해상도 저대역폭 SIP 기반의 비디오 엔드포인트
Avaya Flare <sup>®</sup> Experience Avaya	독특한 매력의 멀티모달 협력 경험 제공
Video Conferencing Solution	중대형 기업을 위한 미디어와 통신서버제공

## 3) 시스코

제품명	기능
unified communication 500 series for small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sco 통합 인터넷전화</li> <li>. 호처리를 위한 UC 매니저 익스프레스</li> <li>. LAN 스위칭</li> <li>. 보안 방화벽 VPN 기능</li> <li>. 무선 LAN기능 옵션</li> <li>. 시스코 환경설정 지원</li> </ul>

## 4) 폴리콤(Polycom)

제품명	기능
CX7000	마이크로소프트 Lync와 통합 기능, on premis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 (IM, 온라인 회의, 콘텐츠 협업)
HD video confeencing solution	주니퍼 네트워크를 위한 비디오 컨퍼런싱 장비
VVX 1500™	미디어 폰
Polycom SoundPoint®	IP 데스크톱 폰
Polycom SoundStation®	컨퍼런스 폰
Polycom HDX®	개인형 및 룸형 컨퍼런스
Polycom RMX®	실시간 미디어 컨퍼런스 플랫폼
Polycom HD voice and video endpoints and Polycom UC Intelligent Core™ solutions	지멘스를 위한 솔루션으로써, OpenScope UC를 지원하며 완전한 기업통신제공
Secure Unified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UCC).	McAfee와 함께 개발한 보안성이 강화된 UC 및 협업기능 제공
Polycom HD voice and video solutions into Avaya Aura platforms	내장된 대역관리, 프레즌스, 호 허가 제어

5) NEC

제품명	기능
UNIVERGE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NEC의 IP 구조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특별히 설계된 업무에 대하여 최적의 모바일 환경을 제공함

6) IBM

제품명	기능
Unified Communications & Collaboration (UC <sup>2</sup> ™) solution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실시간 통신, 실시간 메시징, 온라인 미팅 등의 서비스를 전화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제공함

- 솔루션별 관련기술 제공현황

1) on-line conference 도구

이름	인터페이스 가용성	수용규모	특징	지원표준
Adobe Connect Pro	-초보자가 사용하기 어려움	-200명까지 수용가능(큰 회의에 적합)	-iPhone 또는 iPod touch를 이용해 화상회의 접속 가능하고 미디어 공유 가능 -여러 개의 회의실을 허용하고 브랜드가 달라도 콘텐츠 공유 가능	-TCP/IP -SIP -H.264
Dimdim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가장 쉬운 툴	-프리버전 : 20명까지 -Pro버전 : 50명까지 -1000명 제공 가능한 옵션도 있음	-VoIP 및 화면 공유 같은 유용한 기능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OS와 호환성 문제가 없음 -호스트가 전체 회의실의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음	-Web2.0 -html -TCP/IP

GoToMeeting	-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움	- 15명까지 가능	- Citrix Online에서 만들었음 - 작은 회사에 유용한 툴 - 미팅 녹음, 화면 공유, 참석자 사이 채팅 허용 - 미팅 시작 전 참석자들은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TCP/IP - html
Microsoft Office Live Meeting	-	-	- GoToMeeting 과 달리 클라이언트 다운이 필요 없음 - 검색기능 가능 -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회의 문서 검색 가능	- PSTN/ - VoIP - integration
WebEx Meeting Center	- 웹브라우저처럼 구동 - 사용하기 쉬움	- 미팅당 25명까지	- 작은 모임부터 대규모 회의까지 제공 - Cisco 툴 중 하나 - Outlook과 통합되어 회의를 시작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직접 초대장을 보내기가 쉬움 - 강력한 보안기능	- html

## 2) 협업 도구

이름	인터페이스 가용성	적용 대상	특징	지원표준
Huddle	- 직관적이고 쉬움	- 워드 프로세서들 주로 사용하는 사람	- 위치에 상관없이 문서 생성 및 편집이 실시간으로 가능 - 이메일을 통해 동료들을 초대하여 함께 팀을 만들어 작업 가능 - 초대 수락 후 팀의 모두는 문서 업로드 및 편집	- 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하고 서로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음</li> <li>- 문서의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원본 문서를 이용 가능하게 유지 시켜 줌</li> <li>- VPN 없이도 고도의 보안유지 가능</li> </ul>	
Basecamp	심플한 인터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툴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ol lacks이 있어 불편함</li> <li>-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음</li> <li>- 새로운 메시지가 게시되면 팀원은 이메일을 통해 통지 받으므로 메시지를 놓칠 염려가 없음</li> <li>- 전날의 활동보고를 digest 이메일을 보냄</li> <li>- 많은 언어를 제공하여 여러 나라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게 유용</li> <li>- 앱이 불필요하며, basecamphq.com에 접속하기만 하면 됨</li> </ul>	-html
Wrike	초급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회사, 큰 회사 둘다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이 핵심</li> <li>- 작업을 하기 위해서 CCing 이메일로 플랫폼에 프로젝트 추가</li> <li>- 프로젝트 생성 후 타임라인을 일 주, 달, 분기, 년 단위로 보고 받을 수 있음</li> </ul>	-html
Onehub	Drag&Drop 형식의 쉬운 인터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bs라고 불리는 가상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음</li> <li>-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메일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만 있으면 가능</li> <li>- 가입 즉시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사용자정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li> <li>- 업로드 속도가 매우 빠름</li> </ul>	-html
Google Do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협업 기능이 있는 무료 툴을 찾고 있는 팀을 위한 플랫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만 있으면 따로 가입 과정 없음</li> <li>-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문서의 변경 내용을 볼 수 있음</li> <li>-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색깔의 커서가 있고 색에 따라 누가 무엇을 변경했는지 알 수 있음</li> <li>- MS와 문서 도구 전환이 쉬움</li> <li>- Huddle이나 Wrike 처럼 풍부한 기능은 없는 기본적인 툴</li> </ul>	-html

## 나. 스마트워크 기술분류

스마트워크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근무환경과 이용환경이 상이하게 되며, 이러한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기술적 요구기능 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 ○ 재택근무 환경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
- 태내 TV/PC/전화 등을 결합한 효율적 근무환경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육아휴직, 노약자, 1인 기업 등을 위한 보급형 업무환경

〈표 2-20〉 재택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스마트워크 방식	이용 환경	기능 요구사항
재택근무	- 태내 업무 환경	- 태내에서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기능 - 다자간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의 기능 - 회사 전자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직원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기능 - 문서공유 등들 위한 협업툴 -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 유선전화, 인터넷회선 등의 네트워크 - FMC - 안정적인 품질
	- 데이터 보안 환경	- 통신 및 데이터 보안
	- 업무용 장비 환경	- 업무용 단말장치(PC, 모니터, IPTV, 팩스, 프린터, 스캐너 등) - 스피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 주부, 노약자, 장애인 용 맞춤형 UI/UX

○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환경

- 각 지역 거주지 인근에 구축된 전용시설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무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
- 고현장감 회의실, 집중근무 환경, 육아/휴게/편의 시설 등을 마련하여 안락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

〈표 2-21〉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스마트워크 방식	이용 환경	기능 요구사항
스마트워크센터	- 실감형 업무 및 공동 작업 환경	- 실제 현장에 있는듯한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회의 - 다자간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 - 개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 회사 전자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직원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 유선전화, 인터넷회선 등의 네트워크 - 안정적인 품질
	- 데이터 보안 환경	- 통신 및 데이터 보안
	- 업무용 장비 환경	- 업무용 단말장치(PC, 모니터, IPTV, 팩스, 프린터, 스캐너 등) - 스피커,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 노약자, 장애인 용 맞춤형 UI/UX

○ 모바일오피스 근무환경

- 스마트폰, PDA,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업무환경

〈표 2-22〉 모바일오피스 근무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스마트워크 방식	이용 환경	기능 요구사항
모바일 오피스	- 이동환경에 필요한 업무 작업 환경	- 회사 전자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직원검색을 위한 그룹웨어 - 회사업무용 응용 - 개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 회사와 외부에서의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단일화된 저장 기능
	- 무선 네트워크 환경	-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WiFi, 3G, LTE, WiBro 등)
	- 데이터 보안 환경	- 무선 환경에서의 통신 및 데이터 보안
	- 모바일 단말 장비 환경	- 스마트 단말장치(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노트북, 태블릿, PDA 등) - 모바일용 UI/UX

#### 다. 스마트워크 서비스 분류

〔그림 2-7〕 스마트워크 서비스 분류



- 스마트워크에 포함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23〉 스마트워크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능

서비스 유형	제공 기능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고해상도, 실감형 화상회의 서비스로 협업툴 기능도 제공
컨퍼런스 서비스	컨퍼런스 통화 기능 제공
모바일워크 서비스	모바일 오피스,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이동형 업무환경 등을 제공
통합통신(Unified Communication) 서비스	공동문서작업, 인스턴트 메시징, 자료공유, 컨퍼런스 등의 서비스를 통합제공
Remote Access 서비스	데스크톱 가상화, 스토리지 클라우드, 원격 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원격협업 서비스	원격지간의 공동문서작업, 자료공유, 화면 공유, 컨퍼런스 통화 기능 제공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워크에 핵심적인 전달망에 대한 품질제어, 이동성 제어, 전송제어를 제공
보안 서비스	스마트워크 전반에 걸친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응용/데이터/사용자 보안 기능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워크에 분산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스토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기능제공
개방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워크 서비스의 개발 및 운용/유지보수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미들웨어의 한 형태로서, 본 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가능함
UI/UX	스마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손쉬운 인터페이스 제공 기능
시험, 품질인증 및 관리	스마트워크 응용서비스별 시험 규격, 품질인증제도 및 체계정립, 스마트워크 유형별 품질인증 규격, 스마트워크센터 관리 및 운용 표준 등의 제공

## 라. 스마트워크 기술 분류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트리 도출을 위해,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단말, 플랫폼 (소프트웨어 포함), 네트워크, 응용/보안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안된 스마트워크 기술트리는 다음과 같다

〈표 2-24〉 스마트워크 기술트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말	텔레프레즌스 단말 기술	고음질 에코캔슬링 기술
		영상/음성 인코딩/디코딩 기술
	UI/UX	사용자 입력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컨퍼런싱 기술	다자간 영상/음성호 제어 기술
		에코 캔슬링 기술
영상/음성 코딩 기술		
플랫폼 (소프트웨어 포함)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 기술
		인터페이스 서버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SaaS(SoftwareasaService) - 응용 SW를 서비스로 제공
		PaaS(PlatformasaService) - SW개발환경을 서비스로 제공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 컴퓨터시스템HW(CPU,Disk등)을 서비스로 제공
	텔레프레즌스 서버 기술	MCU(Multipoint Control Unit) 기술
		컨퍼런싱 기술
		디스플레이 및 시선처리 기술
		모바일 단말에 대한 백업기술
	원격 접속 기술	데스크톱 가상화
원격제어		
UC 통신 플랫폼 기술	멀티모달 기술	
	유무선 통신 기술	
네트워크	품질 제어	QoS/QoE 제공 기술
		전송 대역폭 자원 할당 기술
	전송 제어	브로드캐스트 기술
		멀티캐스트 기술

응용/ 보안	이동성 제어	모바일 IP 기술
		서비스 이동성 제공 기술
		유무선간 이동성 제공 기술
	Collaboration tools 기술	공동문서작업 기술
		화면공유 기술
		자료공유 기술
		인스턴트 메시징 기술
		가상저장공간 기술(웹하드 등)
		멀티미디어/하이퍼텍스트 정보 송수신 기술
		네트워크 보안
	IPSec 기술	
	자료공유	가상저장공간 기술(웹하드 등)
		스토리지 클라우드
		보안성이 향상된 파일전송 기술
	Business Process Integration (BPI)	BPI
	모바일 보안	모바일 단말에 대한 보안 및 관리기술
모바일 단말과 서버간의 보안기술		
모바일 단말과 접속하는 서버의 보안기술		
모바일 단말에 대한 백업 기술		

스마트워크 실현을 위한 기술이 방대하므로 산업체, 전문가들 간에 합의된 하나의 기술 트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여기에서 제안하는 기술 트리 역시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중점/미래 기술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 개발 중점 기술 및 장래에 스마트워크를 위해 필요한 미래 기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5〉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중점/미래기술

활용기술	중점기술	미래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코덱, 영상코덱 기술</li> <li>- 다자간 영상회의 기술</li> <li>- 원격회의 관리기술</li> <li>- 영상콘텐츠 관리 기술</li> <li>- 녹화 및 스트리밍 기술</li> <li>- 공동문서 작업 기술</li> <li>- 화면공유 기술</li> <li>- 자료공유 기술</li> <li>- 가상저장공간 기술</li> <li>- 멀티미디어/하이퍼텍스트 정보 송수신기술</li> <li>- 그룹웨어 기술</li> <li>- 통합 메시징 기술</li> <li>- 음성인식 기술</li> <li>- 음성메일 기술</li> <li>- QoS/QoE 기술</li> <li>- 자원할당 기술</li> <li>- 모바일 IP 기술</li> <li>- 이동성 제공 기술</li> <li>- 브로드캐스팅/멀티캐스팅 기술</li> <li>- VPN 기술</li> <li>- 웹서비스 기술</li> <li>-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플랫폼 기술</li> <li>- 지식 협업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기술</li> <li>- 상황인지기반 다차원 멀티모달 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술</li> <li>- 스마트오피스를 위한 디바이스 매시업 기반 멀티단말 가상화 기술 개발</li> <li>- 초실감형 스마트팟(Smart-Pot) 핵심 기술</li> <li>- 스마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li> <li>- 영상회의 및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표준화</li> <li>- 원격 공동작업 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 표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감형 가상 소셜네트워크</li> <li>- 오감 3D 기반 협업 기술</li> <li>- 실감형 HCI 기술</li> </ul>

#### 4.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스마트워크 관련 글로벌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저조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및 경험이 부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었으나 해외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으로 인해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해외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이 필요하며,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파악 및 외국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진출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마련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스마트워크 관련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조직 구성, 국제 표준화 선도, 국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홍보 지원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 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현황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은 150여개 기업 중 총 14개 기업으로 약 9%이다. H/W 단말 분야는 6%, S/W 솔루션 분야 94%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6〉 국내 기업 해외진출 현황(단위: 개)

		단말 분야		솔루션 분야					총계	
		화상회의 단말	태블릿 단말	화상회의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전자 문서 솔루션	가상·증강 현실 솔루션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UC 솔루션
기업	중소기업	1	1	6	1	1	0	1	0	11
	대기업	0	0	0	3	0	0	0	0	3
합계 (미진출 포함)		1(3)	1(6)	6(53)	4(45)	1(7)	0(13)	1(21)	0(9)	14 (157)

## ○ 화상회의 단말

- 국내의 화상회의 단말 시장은 그 규모가 작음. 현재 (주)에드팍과 (주)LG, (주)DMT가 시장에 나와 있고 (주)에드팍은 25개국 이상의 수출국을 보유할 정도로 해외수출이 성공적
- (주)에드팍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홍보를 하고, e 메일로 초기 제품 주문하고 이후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고객과 가격, 제품 사양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 이후 필요한 물량만큼 제품을 선적하며 주문에서 선적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일 이내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주문, 까다로운 품질검사,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가능한 기술 영업 인력 보유, 빠른 제품 공급이 성공요인

〈표 2-27〉 화상회의 단말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2	1
	대기업	1	0
합계		3	1

※ 기업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 태블릿 단말

- 태블릿 단말 시장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음. (주)삼성과 (주)LG등이 활발하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스마트워크를 결합한 태블릿 단말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인 (주)엔스퍼트 뿐임

〈표 2-28〉 태블릿 단말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3	1
	대기업	3	0
합계		6	1

※ 기업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화상회의 솔루션

- 화상회의 솔루션 시장은 국내에서 활발하며 확장 중에 있음. 삼성, (주)LG, (주)KT 등의 기업들이 있고 이중 6개의 기업만이 해외시장에 진출
- (주)포앤비의 경우 현재 전 세계 기업고객들이 웹상에서 무료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영어(www.gozimm.com)와 일본어(www.videooffice.jp) 화상회의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최근 유료로 전환.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많은 기업 고객유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가 성공요인
- (주)씨엑스피는 화상 채팅[Ohmylove]사업을 일본에도 서비스하여 인지도를 알렸으며, 화상 회의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화상 시스템만을 연구해온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해외에서 신뢰를 얻은 요인으로 작용
- (주)유프리즘은 2009년부터 매년 World IT show, Digital Media Fair, ITC 등의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에 제품을 알린 것이 몽골이나 이란과 같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 함
- (주)해든브릿지는 특허 기반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 구축과 (주)삼성, (주)LG 등 든든한 사업 파트너를 보유한 점이 성공 요인

〈표 2-29〉 화상회의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50	6
	대기업	3	0
합계		53	6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구축에 진입 장벽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주)삼성, (주)LG, (주)KT, (주)SK 등이 있고 4개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주)KT는 완제품을 공급받기 보다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통신사의 이점을 활용, 기술 라이선싱과 낮은 스토리지 원가로 경쟁하는 것이 성공요인
- (주)LG는 국내 공공정보화 분야를 선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공공 분야의 해외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고 검증된 자체 솔루션 및 플랫폼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개발, 한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한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성공 모델 제시

〈표 2-30〉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40	1
	대기업	5	3
합계		45	4

※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KCSA)회원사 기준으로 산정

## ○ 전자문서 솔루션

- 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전자문서 솔루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요 기업으로는 (주)유니닥스, (주)씨오엑스 시스템 등이 있음

〈표 2-31〉 전자문서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7	1
	대기업	0	0
합계		7	1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상·증강현실이 형성되어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술에 대한 격차가 크게 두드러져 이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주)와이즈플렉스, (주)디스트릭트 등이 있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가상·증강현실은 App을 활용해 시장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를 위한 가상·증강현실은 구상중이거나 전무한 실정

〈표 2-32〉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13	0
	대기업	0	0
합계		13	0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모바일오피스 솔루션

- 주요 기업으로는 (주)삼성, (주)SK, (주)KT, (주)한글과 컴퓨터 등이 있으며 국내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현재 확장 중에 있음
- (주)한글과 컴퓨터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 기본으로 SW를 내장해서 판매하여 계런티를 받고 다양한 모바일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술력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에도 진출

〈표 2-33〉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18	1
	대기업	3	0
합계		21	1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 통합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 솔루션
  - 주요 기업으로는 (주)삼성 (주)KT 등이 있음. 최근 App 시장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표 2-34〉 통합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현황

		화상회의 단말	해외진출 기업 수
기업	중소기업	7	0
	대기업	2	0
합계		9	0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에 한함

〈표 2-35〉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 기업리스트

		기업명 (해외시장 수출기업 : * 표시)	총 기업수	수출 기업수
단말	화상단말	· 에드팍* · LG · DMT	3	1
	태블릿단말	· 엔스퍼트* · LG · 삼성 · 삼보 · 아이리버 · 웹머신즈	6	1
솔루션	화상회의 솔루션	· 포앤비* · 씨엑스피* · 유프리즘* · 우암* · 해든브릿지* · 디지털존* · 삼성 · LG · KT · 인포맥스시스템 외 43곳	53	6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 KT* · LG CNS* · 삼성 SDS* · 이노그리드* · SK · 티론 · 효성아이티엑스 · 굿어스 · 클루닉스 · 엠앤엘솔루션 외 35곳	45	4
	전자문서 솔루션	· 유니닥스* · 씨오엑스 · 마크애니 · 네스지오 · 스켄아이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캔포매드</li> <li>· 넥센시스템</li> </ul>		
가상증강 현실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브버추얼</li> <li>· 한국가상현실</li> <li>· 플러</li> <li>· VRX</li> <li>· 파노시스</li> <li>· handVR</li> <li>· 리얼타임비추얼</li> <li>· 와이즈플렉스</li> <li>· 디스트릭트</li> <li>· 코아블루</li> </ul> <p style="text-align: right;">외 3곳</p>	13	0
모바일오 피스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과컴퓨터*</li> <li>· 삼성</li> <li>· SK</li> <li>· KT</li> <li>· 오피스톡</li> <li>· 이카운트</li> <li>· 팀오피스</li> <li>· 워크플랜</li> <li>· 원실트</li> <li>· 나라비전</li> </ul> <p style="text-align: right;">외 11곳</p>	21	1
UC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li> <li>· KT</li> <li>· 필라넷</li> <li>· 허브넷</li> <li>· 하이웍스</li> <li>· 한과박소프트</li> <li>· 유퀘스트</li> <li>· 코비전</li> <li>· 인터메이트</li> </ul>	9	0

※ 기업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1년 이상의 사업체와 관련 협회의 회원사 기준으로 산정

나. 외국기업의 해외진출현황

○ 스마트워크 관련 H/W 기업

- CISCO는 Tandberg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텔레프레즌스 및 화상회의 시장을 주도
- Polycom은 주니퍼 네트워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텔레프레즌스 및 화상회의 특히 HD급 화상회의 서비스를 위한 제품 개발 주도, HP의 비주얼 협업(Visual Collaboration) 사업부 인수를 인수, HP의 설치형 비주얼 협업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통합된 모바일, 데스크톱, 회의실 및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솔루션을 갖추
- Lifesize는 업계 최초로 HD 비디오 통신 제품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상 단말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솔루션과 각종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 Vidyos는 화상시스템 전문 기업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라우터와 게이트웨이 등의 HW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텔레프레즌스 SW 솔루션, 클라우드 및 UC 서비스를 제공
- 기구축된 판매네트워크와 높은 제품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해외 판매 루트 구축

○ 스마트워크 관련 S/W 기업

- IBM은 UC, Collaboration 및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00여개의 기업 인수 다양한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
-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는 클라우드센터를 통해 전 세계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제공
- 오라클은 최근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함께 있고, 산업 표준인 자바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가상화로 보안성을 높인 퍼블릭

클라우드를 발표, 자사의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처리능력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 중

- 시트릭스(CITRIX)는 자사의 동적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해 보안과 함께 탄력 근무,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
- 알카텔-루슨트는 새로운 오픈터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개방형 아키텍처에 기반해 기업 전반에 걸쳐 대화의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멀티-파티, 멀티-기기, 멀티-미디어 협업 및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맞춤형된 응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보다 상호 협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현. 최근 자사의 UC솔루션과 기업용 텔레포니 솔루션이 '리더 쿼드런트'에 선정
- 어바이어(AVAYA)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다루며 전 세계의 기업 및 기관에 UC, 컨택센터 등을 제공. 최근 HP와 함께 기업용 UC 솔루션을 제작하고 차세대 UC 비디오 솔루션을 발표
- 기구축된 판매네트워크와 높은 제품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해외 판매 루트 구축

○ 스마트워크 서비스 컨설팅 기업

- 영국의 민간기업 BT의 경우 자사의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활용하여 BT Workstyle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솔루션 셋업과 설치
- 스마트워크를 위한 특별한 관리자 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 및 도입 프로세스 지원
- 스마트워크를 자사에 도입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도입과 관리 Know-how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여 수익 창출

#### 다. 해외진출 방안

국내의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솔루션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해외에서 정부 차원의 스마트워크 관련 자국기술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사례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CISCO, IBM 등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유명 해외 기업들의 경우 기 구축된 판매 네트워크와 높은 제품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스마트워크 해외진출은 기업들에 맞기고 정부는 자국내의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스마트워크의 국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해외진출은 이른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 확산 및 기술·솔루션 개발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스마트워크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점(2013년 :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수 20% 이상)에서 본격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 미국, 유럽, 일본 등 스마트워크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국제 스마트워크 연맹(Smart Alliance) 조직 구성·운영
- 각 국가 스마트워크 조직 및 스마트워크 관련 업체도 가입해서 전세계적인 스마트워크 전시회/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관련 제품 홍보 (2013년 하반기까지)
- 국제 스마트워크 연맹에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시에 국내 제품의 신뢰성 보장 (2013년 전반기까지)
- 국내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된 시점(2013년 : 스마트워크 근로자 20% 이상)에서 개발도상국 및 스마트워크 후진국과도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조직 구성

- 국내 스마트워크 서비스,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제품 홍보 (2015년 하반기까지)
  
- 정부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 스마트워크 제품 대여 및 전용 SW 개발·제공 등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홍보 지원
  - 세계적인 행사 (스포츠 행사 - 올림픽, 월드컵 등, 박람회 -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등)에 KOREA 부스를 개설하여 1차적으로 국내 기술 홍보하고, 2차적으로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부스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15년 하반기까지)
  
- 정부의 해외 시범 서비스 및 초청 연수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정부의 해외 시범 서비스 지원 및 관련 공무원, 실무자 초청 연수를 통해 국내 스마트워크 제도 및 관련 제품 홍보 (2015년 하반기까지)
  - 해외 관련 기관과의 미팅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워크 관련 서비스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도모 (2015년 하반기까지)
  
-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 (2015년 하반기까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ODA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무상협력사업에서 공적 자금을 활용한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을 연결

- 국내 기업들은 부담 없는 해외 진출이 가능하며, 정부는 한국의 IT기술 및 스마트워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사회에의 기여도 제고 가능

○ 스마트워크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보 지원

- 이슈리포트 발간 등 중소기업이 획득하기 힘든 해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해외 홍보관을 통한 우수제품 홍보 및 해외진출 설명회 유치 (2013년 하반기까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정보시스템 등 해외 진출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각 나라별 해외진출가이드, 해외투자정보 발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 (2015년 하반기까지)
- 스마트워크 관련 해외진출매칭포털 구축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2015년 하반기까지)

○ 해외 주요 도시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 해외 스마트워크 센터에 국내 스마트워크센터와 연동 가능한 국내 장비 구축 (2012년 하반기까지)
- 해외 주요 도시에 국내 장비로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2014년 하반기 까지)

○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 및 S/W 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 및 S/W 개발 지원 다년도 사업 실시 (2015년 전반기까지)
- 공공지원 및 민간투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 개발 지원 및 개발완료 된 국내 우수 스마트워크 제품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시범 서비스 적용 (2015년 하반기까지)

- 특허(표준화)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스마트워크 관련된 특허 보유 장려 국내 특허 국제 표준화 지원 다년도 사업 실시 (2015년 후반기까지)
  - 공공지원 및 민간투자가 부족한 우수한 스마트워크 관련 특허기술의 상품화 지원 사업 실시하여 창업·사업화를 촉진 (2015년 후반기까지)

〈표 2-36〉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목표 및 세부추진사항

추진 목표		세부추진사항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국제 스마트워크 연맹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국제 스마트워크 연맹 조직 (~ 2013년 후반기까지)</li> <li>○ 개발도상국 및 스마트워크 후진국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조직 구성 (~ 2014년 전반기까지)</li> </ul>
	스마트워크 해외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 스마트워크 제품 대여 및 전용 SW 개발·제공 등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홍보 지원 (2012년 전반기부터 ~)</li> <li>○ 세계적인 행사에 KOREA 부스를 개설하여 국내 스마트워크 홍보 지원 (2012년 후반기부터 ~)</li> </ul>
정부의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해외 시범 서비스 및 초청 연수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013년 후반기부터 ~)</li> <li>○ 공적개발원조(ODA)을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li> <li>○ 스마트워크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보 지원</li> <li>○ 해외 유명 도시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li> <li>○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 및 S/W 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012년 전반기부터 ~)</li> <li>○ 특허(표준화)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012년 후반기부터 ~)</li> <li>○ 스마트워크 관련 제품 및 S/W 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012년 전반기부터 ~)</li> </ul>

### 5.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

스마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대면업무 처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공공부문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스마트워크 관련법제정, 공공부문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의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Control Tower로 하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37〉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 성	주요역할 및 기능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 및 추진과제 확정</li> <li>○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 심의</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li> <li>○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li> <li>○ 통합전산센터 등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기반 조성</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를 위한 ICT인프라 구축</li> <li>○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li> <li>○ 미래형 스마트워크 도입 준비</li> </ul>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분야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수립 지원</li> <li>○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과제 수행</li> </ul>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 정부주요 부처 상호간 스마트워크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역할
민간부문 협회·포럼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기술개발 등 상호 연계

해외 주요국의 추진체계 및 현황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워크 도입·확산을 위해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유도가 주목할 만 하다. 대통령의 관심표명여부에 따라 당시 엘고어 부통령이 이끈 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강력한 실행계획에 따라서 텔레워크가 활성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의 관심 및 강력한 리더십 필요성이 엿보인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을 위해 행정부-행정부 및 행정부-의회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유지하였다. 특히, 행정부는 대통령-PMC-OMB-OPM-GSA가 범정부 텔레워크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 하에 각각의 역할 충실히 수행 하였다. 우리나라도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국회, 대통령-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모든 관련 부처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범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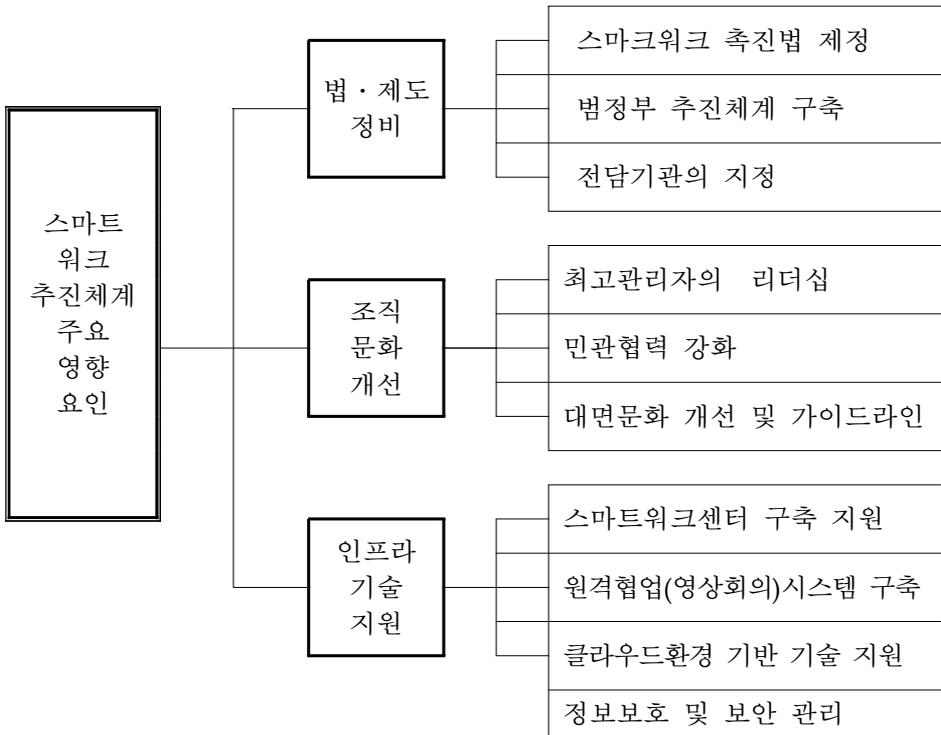
네덜란드는 스마트워크 도입과 확산을 가장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재단(Double-U Foundation)을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SWC(SmartWork Center)로 인정 받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 9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매우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Doble U Foundation)을 통해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해 주는 제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총무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텔레워크의 도입과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비즈니스로 성업 중이

므로,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스마트워크 추진체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조직문화의 개선 및 인프라 기술 지원 등의 영향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들 분야의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영향요인



국내의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공공부문은 행정안전부, 민간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정해 관련부처 및 사업별로 다수의 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도 정비 및 스마트워크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승인절차 제도 개선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거규정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후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시장 주도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이루고, 자생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3 장 결 론 및 시 사 점

본 과제에서는 '15년 근로자 30%가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법·제도 개선 정비방안 연구,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부정적 인식 제고방안연구, 스마트워크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연구 등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은 현재 정책반영을 모색중이며, 해당연구자료가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할수 있기를 바래본다. 더불어 홍보동영상 및 맞춤형 교재를 활용,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가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확대 정책에 활용되어,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물리적·시간적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물론,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흥렬, 전수아, 김소영, 어수봉(1997),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용노동부(20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2010.10.
- 권태희, 2010.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 (Work Cultures Impact Effects on Work - Family Balance). 여성연구, 78(여성연구 통권 제78호): 5-30.
- 김영옥·정금나·안소영.(2001). 기업의 원격근무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2001 연구보고서 230-16』,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 외(2009),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2011),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2011.01.
- 이애련(2011), 저출산 시대에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자의 사례 연구: 서울시 동대문 구청의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1호, pp.225-251, 2011.3.
- 정지은(2009), 『경영노트: 창조경영과 유연근무제』,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 Smartwork Insight, 제1호, 2010.11.
- 황수경 외(2008),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해외 문헌

- Abdel-Wahab, A. G.(2007), "Employees' attitudes towards Telecommu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the Egyptian Governorate of Dakahlia."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6(5): 367-375.

- Atefeh S.M.(1996), Benefits Achieved through Alternative Work Schedules, Human Resource Planning, Vol. 19.
- Basole, R.(2007), The emergence of the mobile enterprise: A value-driven perspectiv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anagement of Mobile Business, Georgia.
- Belanger, F., R. W. Collins, et al.(2001), "Technology Requirements and Work Group Communication for Telecommuter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2(2): 155.
- Branine, M.(1999), "Part-time work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of Denmark, France and the UK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10(3): 411-428.
- Christensen, K. E., & Staines, G. L.(1990), Flextime: A viable solution to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Family Issues, 11(4), 455-476.
- European Union-supported Small Business Operational Programme, <http://www.ework.ie>
- Hayman, J. R.(2009), "Flexible work arrangements: exploring the linkages between perceived usability of flexible work 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Community,Work&Family12(3): 327-338.
- Hill, E.J., Hawkins, A.J., Martinson, V, & Ferris, M.(2003), Work-Family Conflict, Fit, and Adaptive Strategies in a Global High-Tech Company. Fathering, 1, 3, 239-261
- Mann, S. and L. Holdsworth(200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eleworking: stress, emotions and health." NewTechnology,Work&Employment18(3): 196.

- McCrate, E.(2005), "Flexible Hours, Workplace Authority and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in the US." *Feminist Economics*, 11 (1), 11 - 39.
- Nilles, J. M. *Making Telecommuting Happen: A Guide for Telemanagers and Telecommuter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4.
- O'Neill, T. A., L. A. Hambley, et al.(2009), "Predicting teleworker success: an exploration of personality, motivational, situational, and job characteristics." *NewTechnology,Work&Employment*24(2): 144-162.
- Polivka, B. J.(1996), Rural sex education. Assessment of Programs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Public Health Nursing*,13, 425 - 433.
- Richman, A. L., J. T. Civian, et al.(200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flexibility, supportive work-life policies, and use of formal flexible arrangements and occasional flexibility to employee engagement and expected retention." *Community,Work&Family*11(2): 183-197.
- Stavrou, E. T. (2005). "Flexible work bundles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European work context." *JournalofOrganizationalBehavior*26(8): 923-947
- T. M. McMenamín.(2007), "A time to work: recent trends in shift work and flexible schedules". *Monthly Labor Review*, 130(12): 3-15.
- <http://www.mom.gov.sg/statistics-publications/national-labour-market-information/surveys/Pages/labour-force-survey.aspx>
- <http://www.statistics.gov.uk/hub/index.html>
- <http://www.wers2004.info/index.php>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953>

부록 1>

#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촉진법안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2011. 12.



# 〈 목 차 〉

##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I. 추진 배경 및 법 제정 필요성 .....	1
II. 제정방향 및 구성체계 .....	2
III. 주요내용 .....	4
IV. 법안상 주체별 역할 및 의무 .....	6

## 조문별 설명자료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10
[제2장]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등(제6조~제8조) .....	48
[제3장]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제9조~제12조) .....	60
[제4장]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장려(제13조~제16조) .....	102
[제5장] 스마트워크 이용 보호 등(제17조~제21조) .....	127
[제6장] 보칙(제22조~제27조) .....	144
[제7장] 벌칙 .....	167

#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II. 제정방향 및 구성체계 .....	2
III. 주요 내용 .....	4
IV. 법안상 주체별 역할 및 의무 .....	6

## □ 추진 배경

-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대중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여건 성숙
-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현안 해소를 위해 그린IT 기반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
- 민간업계 또한 스마트워크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주목하고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법적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지원확대 희망

## □ 법 제정 필요성

- 스마트워크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 필요
  - ※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업무수행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등 일부 법령이 존재하나 단편적인 수준에 그침
- 특히,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이용환경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대응책이 필요
- 아울러, 스마트워크는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스마트워크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과잉근로 및 과잉감시, 근로환경 열악화 등을 이유로 각국이 별도의 보호 장치 마련

## □ 제정방향

- **(추진체계)**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 관련부처 협의 등을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이용환경 조성)** 스마트워크 기술·서비스개발 지원, 서비스의 품질인증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컨설팅기관의 지정 등
- **(도입·활성화 대책)** 스마트워크 이용확산 및 촉진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장려제도 수립,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각종 복지제도 마련,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교육 등을 추진
- **(정보보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 **(근로자 보호)**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 건강보호, 사생활 보호 등



## < 법안 의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3조), 사용자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제2장 스마트워크 촉진 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워크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실태조사 등(제8조)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안)

총 7장, 29개조 및  
부칙

### 제3장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제9조)  
스마트워크서비스 등의 표준화(제10조)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제11조)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제12조)

### 제4장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장려

사용자에 대한 지원(제13조)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14조)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제15조), 국제협력(16조)

### 제5장 스마트워크 이용보호 등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17조), 스마트워크서비스 정보보호기준(제18조)  
보호대책 수립시행(제19조), 정보의 침해·누설 등의 금지(제20조), 장애 복구 등(제21조)

### 제6장 보칙

스마트워크 촉진재원의 조달(제22조)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 등(제23조), 자료 제출 등(제24조), 시정명령(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 제7장 벌칙

벌칙(제28조), 과태료(제29조)

### 부칙

시행일

## □ 법안의 주요내용

### ○ 법률의 적용범위

- (근무형태) 재택근무, 이동근무, 스마트센터근무 이외에 **지능형 업무환경**을 포함한 **광의의 스마트워크 개념**으로 접근 (안 제2조)
- (규율대상)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사용자,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스마트워크근로자,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 등임

###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6조)
- (정책위원회)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분야별 스마트워크 도입 상황점검·평가, 법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안 제7조)

### ○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

- (서비스개발 지원)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개발,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안 제9조)
- (표준화) 스마트워크근무 활성화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기술의 표준화 추진 및 표준화사업 지원 (안 제10조)
- (품질인증) 스마트워크서비스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도입 (안 제11조)
- (건설당선문기법) 스마트워크 환경 분석 및 업무적합도 평가, 스마트워크 적용기술 및 법제도 정보 제공, 스마트워크 보안대책 자문 및 수립 등 수행 (안 제12조)

○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장려

- (사용자 지원) 통신장비 구입 또는 임차료, 스마트워크서비스 이용료 및 스마트워크 컨설팅 비용 등 지원 (안 제13조)
- (근로자 지원) 스마트워크 희망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저소득근로자 등 우선 지원 (안 제14조)
- (문화 확산) 범국민적 문화운동으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의 날 지정, 교육, 각종 포상 등의 홍보지원 (안 제15조)
- (국제 협력) 스마트워크 서비스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국제협력을 추진 (안 제16조)

○ 스마트워크 이용 보호 등

- (근로자 보호)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근로자의 건강보호,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등 (안 17조)
- (정보보호기준) 스마트워크용 단말기 분실·도난 및 정보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 (안 제18조)
- (스마트워크 장애에 따른 배상책임 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근무자의 배상책임 면제 (안 제21조)

# IV

## 법안상 주체별 역할 및 의무

###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및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제도 및 관행개선, 인식제고, 세제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 차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인식제고</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li> <li>○ 예산상의 조치</li> <li>○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li> </ul>

## □ 정부

-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를 도입·시행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및 방통위의 스마트워크 촉진 계획 수립시 지원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워크 도입·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li> <li>○정보통신료, 전기료 등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이용료</li> <li>○스마트워크 컨설팅 비용</li> <li>○스마트워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방통위)</li> <li>○계획 수립시 방통위와 협의</li> <li>○방통위 실태조사 요청시 지원</li> </ul>

## □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 수립,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 표준화,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교육 및 문화 확산, 국제협력, 서비스 품질 인증 및 정보보호 기준고시, 재원조달, 협회설립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스마트워크 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li> <li>○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li> <li>○스마트워크 서비스·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추진</li> <li>○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li> <li>○스마트워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등의 활용 교육</li> <li>○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사업 추진</li> <li>○스마트워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li> <li>○서비스 품질인증 및 정보보호기준 고시</li> <li>○스마트워크 촉진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li> <li>○스마트워크 진흥협회 설립</li> <li>○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li> <li>○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li> <li>○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li> </ul>
---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및 근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제출 협조</li> <li>○ 정보보호기준에 의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 조치</li> <li>○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li> <li>○ 장애 복구 및 재발 방지</li> <li>○ 관계 물품·서류 제출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li> <li>○ 내부 제도 및 관행 개선</li> <li>○ 스마트워크 참여기회 확대</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 차별금지</li> <li>○ 정보보호기준에 의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li> <li>○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li> <li>○ 장애 복구 및 재발 방지</li> <li>○ 관계 물품·서류 제출 의무</li> <li>○ 스마트워크 근로자 건강보호 사생활보호, 환경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 혜택</li> <li>○ 건강보호 혜택</li> <li>○ 사생활 보호혜택</li> <l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장애 면책</li> </ul>

# 조문별 설명자료

<b>제1장 총칙</b> .....	<b>10</b>
제1조(목적) .....	10
제2조(정의) .....	1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31
제4조(사용자의 책무) .....	3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46
<b>제2장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등</b> .....	<b>48</b>
제6조(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8
제7조(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3
제8조(실태조사 등) .....	56
<b>제3장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b> .....	<b>60</b>
제9조(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60
제10조(스마트워크서비스 등의 표준화) .....	75
제11조(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	82
제12조(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	95
<b>제4장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장려</b> .....	<b>102</b>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	102
제14조(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지원) .....	110
제15조(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 .....	118
제16조(국제협력) .....	124
<b>제5장 스마트워크 이용 보호 등</b> .....	<b>127</b>
제17조(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	127
제18조(스마트워크서비스 정보보호기준) .....	133
제19조(보호대책 수립시행) .....	136
제20조(정보의 침해·누설 등의 금지) .....	139
제21조(장애 복구 등) .....	141
<b>제6장 보칙</b> .....	<b>144</b>
제22조(스마트워크 촉진재원의 조달) .....	144
제23조(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 등) .....	149
제24조(자료제출 등) .....	153
제25조(시정명령) .....	158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161
제27조(별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64
<b>제7장 벌칙</b> .....	<b>167</b>
제28조(벌칙) .....	167
제29조(과태료) .....	170

# 제1장

# 총 칙

##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취지

- 이 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인프라와 IT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개인과 관련하여서는 삶의 질 향상을, 국가·사회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영역을 '국가사회 전반'이라 표현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스마트워크가 도입되고 확산되도록 활성화하는 것을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정함

### 주요내용

- 저출산 풍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근로자들의 인식변화 등에 따른 사업장의 근무방식 개선 요구, 범세계적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요구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워크가 대두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정보통신 인프라가 최고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는 만큼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활성화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07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u-Work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워크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10년 9월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5년까지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7천 5백억원의 부가가치와 1조 이상의 생산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근거나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는 전무함
  -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스마트워크 관련 규정은 스마트워크를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정도에 불과하고, 스마트워크는 물론 그 유사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음
  
-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참여 촉진을 위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현행 스마트워크 관련 규정>

관계법령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0.6.10)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등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1.18)	제2조 제3호"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목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2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등
방송통신발전기본 법 (제정 2010.3.22)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1.13)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일부개정 2010.3.31)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항 5호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재택) 근무 지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전자정부법(일부개 정 2010.5.17)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 주요 논의사항

### 1. 법안 제목 선정

○ 현 법률안명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논의가 존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 「지능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 일반적으로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이라는 명칭이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의 기술 발전 과정에서 IPTV, 위성방송 등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촉진법'이라는 법률안의 성격에 맞추어 정보통신망에서 나아가 방송까지도 포함하는 '방송통신'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함

- 방송통신"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문법에 맞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른 법률의 용례를 참조하여 '방송통신'으로 결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방송통신'의 정의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

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 그 밖에 '지능통신망'이라는 용어도 제안되었으나, 다른 법률에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이고 정보통신망 등 다른 용어와의 차이도 불분명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함

## 2. 외국어가 법률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명에는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손쉽게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게 해 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등 이미 외국어가 법률명에 포함된 사례가 존재함

## 제2조

##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워크”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임대하거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

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방송통신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자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공공기관' 등의 개념을 구제화하여 동법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 주요 내용

### 1. 용어의 정의(제1항)

#### 1) 스마트워크(제1호)

- "스마트워크"는 종래 사용되어 오던 원격근무, 재택근무, U-Work, 가내근무, working from home(WFH), working at home(WAH), E-Commuting, E-Work 등 다른 유사용어와 구별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둠
  -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지능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말함
    - ※ 기존의 다른 용어들은 원격근무 등이 행해지는 장소나 방법에 착안해서 특히 주로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단계에 착안해서 부여된 명칭, 특히 주로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단계에 착안해서 부여된 명칭
- 스마트워크 관련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부부처에 따라 스마트워크를 달리 정의하고 있음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는 부분은 부처에 따라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임
  - 그러나 활용하는 기술은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다고 함으로써 그 범위가 차이가 있음

- 당초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스마트워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Smart work는 재택근무 또는 e-work나 u-work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지능화된 원격근무 형태로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매우 높고 유무선, 모바일, 융복합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함.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라고 표현함

- 방송통신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초시간적·초공간적 근무형태 이외에 **지능형 업무환경을 고려한 스마트오피스 개념을 도입하여** 스마트워크 개념을 넓게 정의함

※<참고> 부처별 스마트워크 정의 비교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스마트워크의 정의	<p>&lt;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제2조제1항제1호&gt;</p> <p>“스마트워크”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p>	<p>&lt;스마트워크 촉진법안 제2조제1호&gt;</p> <p>“스마트워크”란 원격근무·재택근무·이동근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p>	<p>&lt;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gt;</p> <p>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p> <p>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미리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p>

## 2)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제2호)

- 이 법이 시행되어 국가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가 도입·시행될 경우에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관련 스마트워크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 등장하게 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를 이 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임대하거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방송통신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함
  
-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임대하거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란 스마트워크에 사용되는 기기, 단말기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 스마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 및 스마트워크 전용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 ‘플랫폼’이란 정보통신분야에서 응용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환경이나 기반을 의미함
  - PC방 사업자 등 유사업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

## ※ 참고: 텔레프레즌스 솔루션 제작 및 협업 업체의 사례



[Contact | Asia Pacific \[change\]](#)

[English](#)

Solutions
Products
Services
Support
Partners
Company

- ▶ Why Polycom
- ▶ Telepresence & Video
  - Polycom UC Innovations
  - Telepresence Solutions
    - Immersive Telepresence
    - Room Telepresence
    - Personal Telepresence
  - Video Conference Systems
  - Management Applications
  - Conferencing Infrastructure
  - Recording and Streaming
  - Security and Remote Access
  - Accessories
  - ▶ Voice
  - ▶ Products A - Z
  - ▶ Resources

Home > Products > Telepresence & Video > Telepresence Solutions
▶ Polycom Telepresence Solutions

[SIGN UP FOR A FREE TELEPRESENCE MEETING](#)

### Telepresence—Like Being There

Why Polycom Telepresence? Polycom's unique telepresence solutions

- Improve productivity by accelerating decision-making
- Deliver competitive advantages and help you realize a rapid ROI
- Reduce the need to travel to lower operating costs and environmental impacts

Distance is no longer a barrier. Visit our [Telepresence and Video Education Center](#) to learn which solution is right for you.

INTRODUCTION
VIDEOS
PODCASTS



If you could look them in the eye...

Polycom offers a complete portfolio of high definition telepresence solutions over IP networks ranging from personal telepresence solutions to immersive telepresence solutions.



**Immersive Telepresence**

Polycom Immersive telepresence solutions provide a natural, "across the table" experience where every meeting participant is shown in true-to-life dimensions. You'll speak with and read the body language of others – just as if you were all in the same room.

> Learn more



**Room Telepresence**

Polycom's powerful high definition solutions for room environments expand real-time knowledge sharing and drive faster, more informed decisions.

> Learn more



**Personal Telepresence**

Polycom Personal Telepresence solutions seamlessly extend clear, high definition video to home offices, mobile users, branch sites, and beyond.

> Learn more

Printer friendly Back to top

Terms & Conditions
Privacy Policy
Trademarks
Site Map
Careers
Contact Us
Share
Follow us






## ※ 참고: 화상회의 솔루션 온라인 제공 서비스 사례

olleh biz 화상회의


Google

검색

olleh biz 화상회의소개
상품안내
서비스신청
고객지원

서비스소개
서비스특성
도입요령
활용사례

olleh biz 소개

- 서비스소개
- 서비스특성
- 도입요령
- 활용사례



플레이먼트  
사용자매뉴얼



복합형 (VCC)  
서비스 소개서



ACROBAT  
READER

### 서비스소개



#### 대한민국 대표 화상회의 서비스 olleh biz

olleh biz는 다년간 화상회의와 전자문서회의 기능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솔루션입니다. UCS(Ubiquitous Conference System) 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olleh biz는 멀티방의 빌려쓰는(ASP) 영상회의 서비스로 네트워크상에서 1:1 또는 다자간에 영상·음성·데이터를 통해 회의, 세미나, 교육 등의 통합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비쿼터스의 실현**  
협업속 방식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일포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합니다.

**목적성향을 위한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저렴한 목적성향의 목적 속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그린IT 경영을 실현으로서 기업 예산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습니다.

**KT 최고의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화상회의 화상교육 세미나 원격제어 서비스를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망과 KT(IDC)BACKBONE에 GB망으로 서버를 운영 하고 있으며 24시간 관제시스템을 통해 A/S운영관리를 함으로서 최고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의 활력소**  
앞으로 목적성향의 발전이 될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해보면서, 관련된 산업전반에 커다란 활력소를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20 -

-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방송통신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자’란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이 스마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춘 공간을 만들어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스마트워크센터와 스마트오피스 등 앞으로 스마트워크의 발전양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공간을 상정하여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개념 정의함

### 3) 공공기관(제3호)

- 이 법은 민간부문에서의 스마트워크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스마트워크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로 삼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개념정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하는 법령은 다수 있음
-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서의 공공기관 개념과 달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도 포함함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등이 있음

---

#### 【참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해석례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대통령령에 포함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등이 있음

## 2.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제2항)

○ 위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 관련 유관 법령에서 사용하는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임

· 이 법안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용어는 '방송통신'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용어로는 '개인정보'가 있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 '임금' 등이 있음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이 법안에서 사용되는 다른 법률상의 용어가 존재

- 안 제13조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참고】 유사입법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 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주요 논의사항

### 1. 정의

#### 1) "스마트워크"의 개념

- 최초 이 법의 논의과정에서 '원격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 및 스마트TV의 등장 등 마하호로 '스마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종래의 정보통신기술(ICT)에 그치지 않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융합서비스 기반의 스마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할 것을 전망함

⇒ 방송통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 법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이 법에서는 '방송통신과 그 관련 기술'이라 하여 방송과 통신에 관련한 기술이 이 법의 규율 대상인 스마트워크의 개념속에 들어오게 됨을 규정하게 됨

- 종래의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직장에서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재택근무의 의미가 매우 강함. 스마트워크센터나 스마트오피스 등의 최근의 새로운 기술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 종래 법령에서는 외국어를 한글로 그대로 바꾼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방세법상의 "레저세"와 같이 오늘날에는 사회의 인식수준과 발달정도에 발맞추어 법령용어에서도 외국어표기를 한글화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있음.

#### 2)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 이 법에의 적용을 받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워크 구현을 위해 중요한 시설과 공간 및 기기와 단말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제공형태를 나열하여 별도의 호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직 스마트워크가 도입 초기에 있는 상황이고, 향후 어떤 형태의 서비스제공자가 시장에 등장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공사업자의 종류를 미리 나열하는 것은 정책이 산업을 앞서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우려됨. 해외사례와 향후 법적용과정을 통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정의규정에 '플랫폼'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가 없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 '플랫폼'을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함

- '플랫폼'은 건축법 제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법률에서는 '기반이나 토대가 되는 시설'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다름
- 정보통신 산업계 전반에서는 '플랫폼'이 응용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환경이나 기반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 참고: 플랫폼과 유사한 개념

구분	프레임워크 [Framework]	아키텍처 [Architecture]	플랫폼 [platform]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부분을 소스코드로 제공하는 틀</li> <li>- 시스템 개발전체에 대한 진행 방법으로 제공하는 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특징을 규정짓는 설계 구조임</li> <li>- 구성요소, 구성, 인터페이스 동작 방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u></li> <li>- 개발언어, 개발환경을 포함</li> <li>- OS도 플랫폼이라 볼 수 있지만 플랫폼이 보다 광의적 의미</li> </ul>

### 3) "공공기관"의 개념

- 이 법의 최초 논의시 민간부문에서의 원격근무 촉진을 목표로 삼아 공공부문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사회 전반에 스마트워크의 보급 및 확산을 꾀하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외에도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공공부문에서도 이미 전자정부법 등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워크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임. 이 법은 이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스마트워크활성화를 꾀하며 국가사회 전반에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2. 용어 정의 추가 문제

- "스마트워크센터"나 "스마트오피스"에 관한 용어정의를 이 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스마트워커" 또는 "원격근무자"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
- ※ 정의규정이 아닌 해당 본문규정에서 "스마트워크 근로자"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스마트워크 근로자”라 한다)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근로조건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5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취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국가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주요국의 예와 같은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1.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인식제고 등(제1항)

- 스마트워킹은 기업 내·외부를 넘나들며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보호, UI 등 강력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지원 필요
- 모바일 오피스 단말 및 솔루션의 경쟁력은 일부 확보되었으나, 영상 협업 분야의 국내 산업체 경쟁력이 미흡하여 범정부적 지원 필요
- 스마트워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문화운동 및 적성·유형별 성공사례 발굴·확산과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 노력 필요
  - 스마트워킹은 저출산·고령화 근로형태 대안, 육아여성 일자리 참여, 재택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

### 2.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건강 및 사생활 보호 등(제2항)

- 스마트워킹 보안문제로 인한 이용자 신뢰수준의 저하로 스마트워킹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조성 노력 필요
  -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워킹 환경에 적용되는 신규정보기술을 통해 다양한 보안위협들이 발생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
- 스마트워킹 보안 인증제 및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도입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

### 3. 근로조건 · 근로환경의 개선,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제3항)

- 기존의 업무방식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유연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킹에 대하여 고용안정성과 인사고과 등에 불리하다는 근로자들의 인식 해소 필요

- 안정적 근로제공과 차별대우의 우려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사항을 명시함

#### 4.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도입촉진과 활성화 노력(제4항)

- 스마트워크에 의한 업무형태 혁신은 중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사회 전반에 미쳐야 함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참여에 기업들이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

#### 5. 인사상의 차별금지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제5항)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으로 스마트워크에 의한 근로제공이 일반 근로제공 행위에 비해 차별대우 받을 것에 대한 우려
-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해 차별없는 대우를 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중앙과 지방의 추진상황을 성과중심관리체계를 통해 결산하고 피드백 해서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을 제고

#### 6. 예산상의 조치(제6항)

- 상기와 같은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미리 마련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

### 주요 논의사항

-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사용자의 책무도 동조에서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제4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책무의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동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책무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율
- 예산마련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방식의 의무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마련을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 국가재정의 특성상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정부부처의 예결산 구조와 부조화할 것이 우려되어 원안대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으로 입법함

## 【참고 1】 유사입법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참고 2】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외국의 정부 정책 사례

### □ 미 국

- 미국은 최근 ‘비상대응체제 확보’의 수단으로 공공 스마트워크 촉진에 주력
- GSA는 예산문제로, 현재의 텔레워크센터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Virtual Telework Environment’를 이용한 재택근무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전환중
- 연방정부 공무원의 원격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텔레워크촉진법’제정 (‘10.12)  
※ 연방정부 공무원 62%가 원격근무가 가능하며 ‘11년까지 15만명 목표 수립

### □ 영 국

- 영국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비용 감소대책’으로 텔레워크 확산에 주력
- 전통적으로 재택근무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이동근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이나 휴대단말기 지급을 지원
- 장비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virtual desk’ 방식을 도입추진 중
- 햄프셔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 햄프셔 주의회의 투자로 지역중소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센터의 초기 구축·운영비 지원(425,000파운드)

### □ 일 본

-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창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정부는 보안문제와 대면결재 중심의 문화로 인해 도입 미흡
- 도쿄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음
- 일본 텔레워크협회 등을 통해 지침/규정개발, 상담센터 운영, 텔레워크 추진상, 이용통계조사, 심포지엄/세미나 등을 추진

###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저탄소 정책과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스마트워크를 적극 추진
  -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간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
  - 전국 약 100여개 민간 센터가 Double U재단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운영
  - 조기 확산· 정착하고 스마트워크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Champion”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 제4조

## 사용자의 책무

-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내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근로자들이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자는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제공·유지·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의 도입취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이를 보장할 사용자(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스마트워크에 대한 근로자 측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워크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등을 제공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통상적인 수준범위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스마트워크 참여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

### 주요내용

#### 1.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제1항)

- 스마트워크를 시행할 경우 통근시간이 절약되고 원하는 곳에서 업

- 통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통계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중 시간부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표 2〉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및 불편	여가 시설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않음	여가를 함께할 사람없음	기타
전체		100.0	21.8	46.1	32.1	100.0	54.3	28.4	1.9	1.8	2.4	7.7	1.8	1.7
지역	도시(동부)	100.0	22.3	46.1	31.6	100.0	55.9	28.4	1.9	1.5	2.5	6.4	1.8	1.6
	농어촌(읍면부)	100.0	19.7	46.2	34.1	100.0	47.6	28.5	1.9	2.7	2.2	13.1	2.0	2.0
성별	남성	100.0	23.3	45.9	30.8	100.0	54.0	30.5	1.8	1.6	2.6	6.3	2.0	1.2
	여성	100.0	20.4	46.3	33.3	100.0	54.6	26.6	2.0	1.9	2.3	8.9	1.7	2.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4.9	46.9	38.2	100.0	62.8	8.7	1.0	1.0	2.0	21.5	2.0	1.0
	100~199만원	100.0	16.9	46.6	36.5	100.0	63.1	23.1	1.6	1.8	1.5	6.2	1.5	1.4
	200~299만원	100.0	21.1	47.3	31.5	100.0	56.4	30.8	2.3	2.0	1.8	3.3	1.7	1.7
	300~399만원	100.0	24.0	46.4	29.6	100.0	45.5	38.9	2.3	2.1	3.2	3.6	1.9	2.4
	400~499만원	100.0	28.5	44.7	26.8	100.0	43.2	41.4	3.4	1.6	3.5	2.5	2.4	2.0
	500~599만원	100.0	31.1	44.5	24.4	100.0	30.0	52.3	1.7	2.6	4.4	3.0	3.0	2.9
600만원 이상	100.0	36.4	40.4	23.3	100.0	28.2	54.0	1.8	2.5	6.1	3.4	1.8	2.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 또한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므로 가족 간 결속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나 자녀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이 비분리 되고, 24시간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업무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스마트워크가 오히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삶과 일이 조화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고】 유사입법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2. 내부제도 및 관행 개선(제2항)

○ 기업의 조직관리는 대면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성과평가에 있어 직원의 근무태도를 중시하는 관리자들의 관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스마트워크 참여를 망설이게 됨

- 관련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워크 도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①관리자의 부정적 태도, ② 조직문화, ③ 스마트워크를 하지 않는 동료 간 불신 등을 들고 있음\*

\* 강여진·정재화,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2007

- 스마트워크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불리한 내부 제도 및 관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실시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근로시간(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채택 등), 임금의 결정 · 계산방법, 야간 · 휴일근로의 인정, 성과평가 · 인사관리 · 사내연수 등의 적용에 있어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참고】 유사입법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스마트워크 참여기회 확대(제3항)

○ 스마트워크는 어느 곳에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고객대면업무나 보안업무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보안 등을 이유로 다수의 주요 업무를 스마트워크에서 배제할 경우 부수적 업무나 임시 업무 등 직장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영역만 스마트워크를 실시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 스마트워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가 적용되는 업무가 다양화되고 핵심 업무도 포함되어야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도 증대할 것이고, 스마트워크 실시로 인한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에게 자발적으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도록 하여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

#### **【참고】 유사입법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스마트워크 근로자 차별금지(제4항)

- 스마트워크 시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스마트워크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간의 처우 문제임
  - 스마트워크 근로자는 사무실 내 근로자처럼 상급자의 상시 관리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임금 계산이나 업무 성과평가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스마트워크 근로자는 사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능력개발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김
- 근로자 복지 시스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장에서 건강관리 등 복지혜택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되어 있어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스마트워크를 끝내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와 스마트워크 기간 중 직장 내 인사이드가 행해지는 경우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될 수 있는 지 여부임
- 관리자가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인식하거나 스마트워크 기간을 경력상 단절로 받아들일 경우 사업장 재복귀나 희망업무로의 배치가 요원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복지·인력 배치 등에 있어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참고】 유사입법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스마트워크 유지를 위한 통상 비용 부담(제5항)

- 도급이 아닌 고용관계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리·관리 등은 사업주가 책임지는 부분임

※ 일례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근로자과건」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을 보면 도급과 파견근로를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기계, 설비, 기자재가 사업주의 책임과 부담인지 여부를 들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설비 등은 사실상 사업주가 아닌 근로

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통신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통상비용도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구분이 어려움

- 이를 빌미로 사업주가 설비의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설비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스마트워크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제5항은 정보통신기기 기타 시설·설비 등의 제공·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비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함

※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상시 결산하여 주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괄 결산방식과 범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면 해결 가능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정취지

-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스마트워크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 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스마트워크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스마트워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이 우선 적용됨

- 근로계약 등 근로자 보호와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근무환경 등과 근로자 건강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장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확대 방안
3.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개선
5. 스마트워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
7.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스마트워크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9. 스마트워크 환경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조성
10. 그 밖에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제정취지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그동안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성과들을 집대성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체계적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일하는 방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지능형 업무환경을 주요국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조기 확보에 기여

## □ 주요 내용

### 1. 계획수립의 주기와 수립주체(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포괄하여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집대성하여 효율적인 스마트워크의 확산 및 활성화를 달성하도록 정책영향력을 집대상하도록 함
  - 수립주기는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집행효과가 그때그때 확인되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수립기관과 시행기관을 통일화함

### 2. 촉진계획의 내용(제2항)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마련

- ①스마트워크 환경조성 계획의 방향 및 목표, ②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확대 방안, ③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④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개선, ⑤스마트워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⑥사용자 등의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 ⑦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⑧스마트워크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⑨스마트워크 환경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조성, ⑩그 밖에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3. 촉진계획의 확정(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촉진계획을 수립한 후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집행효과를 거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Control Tower가 되도록 함

### 4.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제4항)

- 스마트워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현황자료와 분석이 필요하고 현황자료들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제5항)

- 이 법이 추구하는 대상범위는 민간분야의 스마트워크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공부문의 경우도 포함하게 됨

- 이에 따라 수립한 계획의 효과와 영향력은 단순히 국가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전반에 미치게 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주체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둠으로써 국가전체의 정책의 통일성을 가져오고 수립한 촉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임

## □ 주요 논의사항

-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매년 수립하여 집행한 후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성과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함

## 【참고】 유사입법례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제7조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스마트워크 촉진 관련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분야별 스마트워크 도입 상황점검·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확정을 위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스마트워크 관련 주요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함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

-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추진실적 분석·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스마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스마트워크 촉진 관련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 및 집행함에 필요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함

### 2.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구성(제2항)

-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을 누구로 하며, 위원의 수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 주요 논의사항

- 스마트워크 정책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심의기능 외에 의결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동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요 심의사항이 이미 타 조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 및 집행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기능은 제외하기로 함

## 【참고】 유사입법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스마트워크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동향
  2. 업종별·지역별 스마트워크 참여비율 등의 현황, 통계 및 실태
  3.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의 실태
  4. 그 밖에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사용자 단체, 스마트워크 근로자 단체,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영업비밀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 취지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동향, 통계 등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업계의 현황과 근무환경, 근로조건은 물론, 지역별·업종별 스마트워크 참여율 등을 파악할 필요 있음

< 모바일 오피스 도입기업 중 업종별 분포 (SKT) >

업종	도·소매업	운수업	제조/제약업	전기/가스/수도	출판/영상/정보서비스	기타
비율	51.0%	13.6%	8.8%	8.0%	5.4%	13.2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제1항)

- 스마트워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동향, 통계 등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내용: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업종별·지역별 스마트워크 참여비율 등의 현황, 통계 및 실태,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의 실태, 그 밖에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절차 및 공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2. 자료제출 요청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사용자 단체, 스마트워크 근로자 단체,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영업비밀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자료제출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

#### ※ 「통계법」의 적용

- 국가통계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 이외의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참고 1】 「통계법」상 관련 규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2】 유사입법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제3장

##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

### 제9조

###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9조(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연구·개발사업

2. 스마트워크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사업

3. 스마트워크서비스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사업

4.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5. 그 밖에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 취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워크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스마트워크 관련기관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개발,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여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근거 규정 마련
- 스마트워크에 관한 기술이나 서비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전문기관·단체·개인에게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 조세감면혜택 부여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제1항)

- 스마트폰의 확산과 동영상서비스의 대중화는 스마트워크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의 확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이 필요

#### 1) 스마트워크 연구·개발 사업(제1호)

- 스마트워크는 해외에서도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근무방식인 바, 아직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이 활발하지 않음
- 따라서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스마트워크의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사업(제2호)

- 민간기업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때에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므로 스마트워크서비스와 관련 기술 개발 시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더불어 스마트워크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스마트워크가 공공·민간 모두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

### 3) 스마트워크서비스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사업(제3호)

-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스마트워크서비스 현재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준조사 등의 정책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제4호)

- 민간부문에서 스마트워크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이 도입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안전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통해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 대응(근로시간의 산정문제, 통근수당 및 급식비 등)이 가능하며, 시행초기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스마트워크 이용 근로자간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미국의 사례

-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스마트워크에 관한 법제도를 완비함

---

## 【참고 1】 시범사업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11년 6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정보산업진흥원, KT를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 3개 시범사업자들은 '11년말까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12년부터 이를 상용화할 계획
    - ▶ JDC가 운영할 스마트워크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레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레저특화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
    - ▶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시 소재 1인 창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PC환경에서 다자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문서, 동영상,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11년 안에 시작하기로 계획
    - ▶ KT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IT기기 기반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스마트워크 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
-

---

## 【참고 2】 유사입법례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전문기관의 지정(제2항)

- 스마트워크에 관한 정책연구, 시범사업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인력·시설 및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가진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세제지원(제3항)

- 스마트워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
-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 스마트워크

설비구입 및 스마트워크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세법 또는 개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설비에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 채택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동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관련 설비 추가 필요

현 행	개 정 (안)
<p><b>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b>  <b>【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b></p> <p>①내국인이 2012년12월31일까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등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연구시험용...대통령이 정하는 시설</p> <p>2. 직업훈련용...대통령이 정하는 시설</p>	<p>①내국인이 <b>2014년12월31일까지</b>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등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자산을 말한다

1~6. (생략)

①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자산을 말한다

1~6. (생략)

7.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촉진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 개인의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관련 설비 투자액

※시행시기 : 2012년 투자분 부터

---

## 【참고】 유사입법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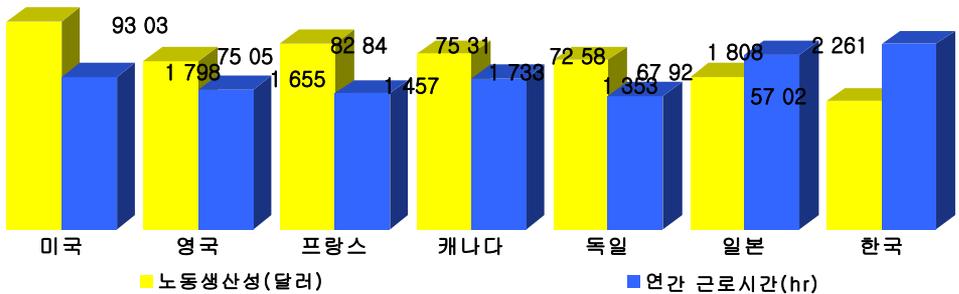
-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 □ 주요 논의사항

1. 스마트워크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견해

- 낮은 업무 생산성에 따른 업무방식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스마트워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 【참고】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및 근로시간(2008년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0.2.1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31개국)”

⇒ 스마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기업 및 단체의 업무생산성 향상 방안도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2.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택근무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 현재 각 사업체에서 고용율 현저히 낮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택근무 장려 차원의 논의 필요

---

## 【참고】 관련 입법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미국 장애인법(Disabilities Act: ADA)은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고용평등위원회는 스마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

## 【참고】 미국 고용평등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관련 사이트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Work At Home/Telework as a Reasonable Accommodation

Many employers have discovered the benefits of allowing employees to work at home through telework (also known as telecommuting) programs. Telework has allowed employers to attract and retain valuable workers by boosting employee morale and productivity.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also helped increase telework options. President George W. Bush's New Freedom Initiativ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telework can have for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ts 1999 Enforcement Guidance on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revised 0/17/02),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said that allowing an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to work at home may be a form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requires employers with 15 or more employees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qualified applicants and employees with disabilities.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ny change in the work environment or in the way things are customarily done that enables an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to apply for a job, perform a job, or gain equal access to the benefits and privileges of a job. The ADA does not require an employer to provide a specific accommodation if it causes undue hardship, i.e., significant difficulty or expense.

No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 - or want - to work at home. And not all jobs can be performed at home. But, allowing an employee to work at home may be a reasonable accommodation where the person's disability prevents successfully performing the job on-site and the job, or parts of the job, can be performed at home without causing significant difficulty or expense.

This fact sheet explains the ways that employers may use existing telework programs or allow an individual to work at home as a reasonable accommodation.

#### 1. Does the ADA require employers to have telework programs?

No. The ADA does not require an employer to offer a telework program to all employees. However, if an employer does offer telework, it must allow employees with disabilities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uch a program.

In addition, the ADA's reasonable accommodation obligation, which includes modifying workplace policies, might require an employer to waive certain eligibility requirements or otherwise modify a program for someone with a disability who needs to work at home. For example, an employer may generally require that employees work at least one year before they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telework program. If a new employee needs to work at home because of a disability, and the job can be performed at home, then an employer may have to waive its one-year rule for this individual.

#### 2. May permitting an employee to work at home be a reasonable accommodation, even if the employer has no telework program?

Yes. Changing the location where work is performed may fall under the ADA's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irement of modifying workplace policies, even if the employer does not allow or offer telework. However, an employer is not obligated to adopt an employee's preferred or requested accommodation and may instead offer alternate accommodations as long as they would be effective. (See Question 6.)

#### 3. How should an employer determine whether someone may need to work at home as a reasonable accommodation?

#### Notice Concerning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mendments Act of 2008 was signed into law on September 25, 2008 and becomes effective on September 1, 2009. Because this law makes several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changes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EEOC will be evaluating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this document. See the [list of specific changes to the ADA](#) made by the ADA Amendments Act.

⇒ 스마트워크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시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안 도입가능

### 3. 세제지원혜택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견해

○ 스마트워크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지원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법이나, 건물의 에너지 사용, 육아시설 설치 시 세제 우대방안과 같이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안 도입가능

## 【참고】 유럽 각국의 인센티브 및 기술지원 현황

구분	내 용
독일	-헷센주(Land Hessen)만이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을 실시 -텔레워크를 위한 인프라, 기기, 집기, 트레이닝 비용 등 투자액 50% 지급
헝가리	-텔레워크 인력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텔레워크 협회와 고용위원회가 공동관리하며, HUF 130~150억불 책정
영국	-햄프셔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센터의 초기 구축·운영비 지원(425,000파운드)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간 센터를 이용하고 이용 댓가를 Double U재단(민간 100여개 센터로 구성)에 지급

- 미국의 경우 스마트워크 센터의 개발에 대해 여러 종류의 보조 및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Intergrated Telecenter Pilot Project"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의 설립을 보조함
  - 대부분의 주정부 교통부(departments of transportation)는 공기오염방지나 교통체증의 감소분에 대해 스마트워크 센터에 지원가능한 예산을 가짐
  - FHA(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도 교통체증 감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연방차원에서 스마트워크 관련 설비에 대한 세금감면을 지원하는 법안(Rep. Rob Whittman 의원이 발의한 H.R. 710, The Telework Tax Incentive Act)과 주 차원에서는 미네소타 하원에서 Telework Tax Credit을 주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
- 미국의 사례는 예산법에 텔레워크지원을 명시하고 보고를 의무화한 95년 이후 텔레워크의 도입률이 급격히 상승함을 보여줌
  - ※ '95년 3,000명에서 도입 후 '96년에 9,000명으로 200% 증가

### 【참고】 미국 각 주별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술지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버지니아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재택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기술지원 및 컨설턴트 지원
오리건주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제공제 및 저리융자 제공
조지아주	-텔레워크 도입·강화를 위한 텔레워크 평가비용을 주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함 -근무자 20% 이상을 텔레워커로 전환하는 경우,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메릴랜드주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종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텔레워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소득세 공제
뉴저지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워싱턴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미시시피주	-시각장애인의 텔레워크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일본의 경우도 원격근무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회사에 세제를 감면해주고 있음

### 【참고】 일본의 원격근무 인구 2배 증가를 위한 실행 계획

구 분	내 용
원격근무에 필요한 요건 및 기반시설 정비	·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정비 - 씬 클라이언트 시스템 실증실험 및 환경정비세제 마련 · 제도 및 환경정비 - 공공부문 : 단축시간 근무제 도입 - 민간부문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개발 및 주지
분야별 원격근무 보급 추진 방안	· 고용형 원격근무의 추진 및 지원대책 · 자영형 원격근무의 추진 및 지원대책 · 육아 여성의 재취직에 도움이 되는 원격근무 추진과 지원대책 · 고령자 취업기회 마련에 공헌하는 원격근무 추진 및 지원대책 ·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원격근무 추진 및 지원대책 · 청년 무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원격근무 추진 및 지원대책
공무원 원격근무 보급 추진 방안	· 국가공무원의 원격근무 추진방안 - 2007년부터 전 부처에 원격근무 시범 도입 - 국가공무원의 단축시간 근무제도와 원격근무 병행 · 지방자치단체의 원격근무 추진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단축시간 근무제도 시행 - 원격근무 실시 사례나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제10조

## 스마트워크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0조(스마트워크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의 활성화 및 도입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관련 서비스·기술의 표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스마트워크 관련 서비스·기술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스마트워크 관련 서비스·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워크 관련 표준화 사업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 취지

- 스마트워크 활성화 및 도입촉진을 유도하고 글로벌 서비스·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스마트워크관련 서비스 및 기술표준화와 관련된 사업내용과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신뢰제고
- 기술표준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과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민간기업의 스마트관련 서비스 및 기술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보통신의 특성상 많은 파생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기술표준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기술 간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인한 운영 및 경영상 문제해소 필요

## □ 주요 내용

### 1. 서비스 및 기술 표준화(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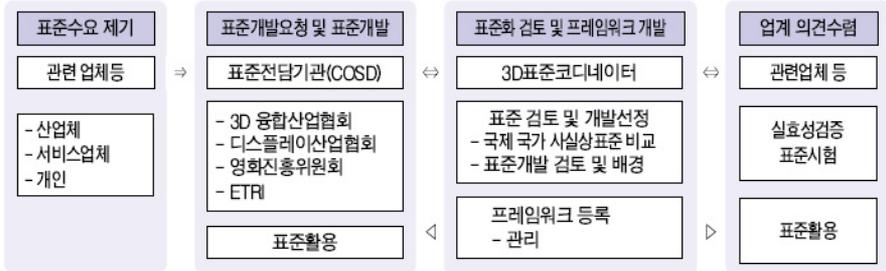
- 스마트워크의 본격 확산 및 보편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적극 활용할 인프라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워크의 서비스 및 기술의 표준화 방안제시
  - 재택근무·모바일 오피스·스마트워크 센터 등에 적용되는 국내외 솔루션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 상호호환성 확보가 전제
  - 다수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솔루션·단말·시스템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 해소
-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에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스마트워크 표준화 사업은 민간분야의 자유경쟁이 아니라 정부주도 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스마트워크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방통위가 주도하게 함으로써 업무중복 및 마찰을 해소

#### 1) 표준의 제정·개정 및 보급(제1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의 서비스 형태별, 기술별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양상에 따라 제정한 표준을 개정·폐지하여 현재의 기술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3D 산업의 기술표준화 전략

〈그림3〉 3D 관련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절차



\* (표준전담기관) 3D안전성-3D융합산업협회, 3D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산업협회, 3D영화-영화진흥위원회, 3D영상정보처리 & 콘텐츠-ETRI 등

### 2) 국내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제2호)

- 스마트워크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수립하여 국제표준도 선진국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
  -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화 수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11위, 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IEC) 14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우리 현황을 고려하여 산학연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스마트워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및 개발 필요

### 2. 표준화에 대한 지원(제2항)

- 민간부분의 창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미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기술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주요 논의사항

### 1. 기술표준화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솔루션간 상호연동 규격 제정

- 스마트워크 기술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다른 기종간 원활한 상호 호환성확보를 목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솔루션간 상호연동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참고】 상호호환성 확보 분야 예시**

구 분	상호호환성 확보 분야 예시
플랫폼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 융합플랫폼간 상호호환성 규격</li> <li>·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규격</li> </ul>
고품질 영상서비스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매체간 Full HD급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 규격</li> <li>· IPTV, DCATV,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다매체간 영상 코덱, 시그널링(호처리) 방식, 번호/아이디 체계, 품질기준 등</li> </ul>
스마트워크 서비스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및 기기에 무관한 연동 규격</li> <li>· 다자간 영상회의, 자료공유 기능, 사용자 인증/보안, 정보단말간 접속/인증 규격, 그룹웨어 등 공통서비스 규격</li> </ul>
이용자 인터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 홀로그램 등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 규격</li> <li>· 제스처 인식, 음성인식, 영상인식, 입출력장치 규격 등</li> </ul>

- ⇒ 현재, KOREN(국가연구시험망)을 활용하여, 국내외 솔루션 업체의 장비/제품간 상호연동 기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가능
- ⇒ 다매체간(PC↔스마트TV↔영상회의), 유무선통합 등 상호연결, 접속제어, 품질 보장을 위한 기능 시험 및 상호연동 규격 마련하고,
- ⇒ H/W, S/W 영상회의 시스템, 스마트TV, 스마트 폰, 스마트패드 등 사업자, 시스템에 관계없이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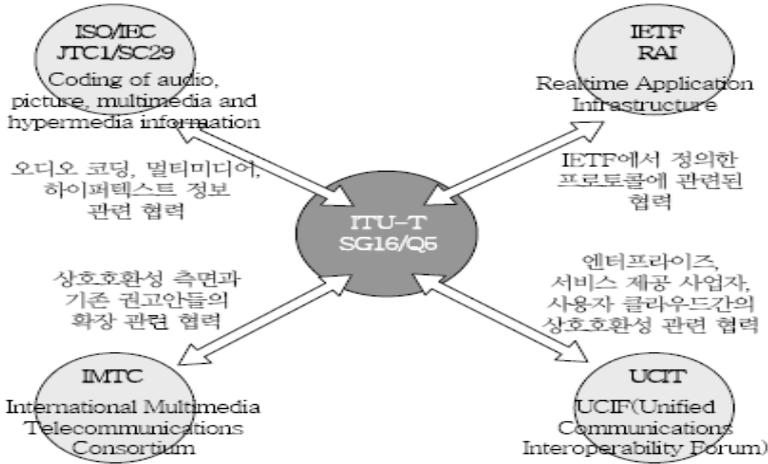
2. 국내 기술표준의 국제화 및 국제규격화 필요

- 방송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작업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

**【참고】 텔레프레즌스의 국제표준화 시도 사례**

기존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하여 실물형 영상회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프레즌스는 스마트워크의 핵심이라고도 일컬어짐. 얼마 전까지 영상서비스는 시스코, 플리콤, 라이프사이즈 등 다양한 해외 우수 기업의 독점으로 상호 연동이 안 되었으나, 최근 표준화를 위한 기구설립



## 제11조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제11조(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이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취지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 시장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 품질 인증'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군간의 상호 연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보장을 통해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확보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
- 인증기준을 달성한 민간사업이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허위인증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간사업의 활성화 및 자율적 경쟁체제 유도

## □ 주요 내용

### 1. 품질인증기준 고시(제1항)

- 품질인증에는 전기제품이나 가스용품의 인증처럼 인증을 받아야지만 제품의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한 의무적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과 같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받는 임의적 인증제도가 존재함

#### ※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법정 인증	강 제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 (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부처 39개 인증) *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임 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 (환경마크 등 17개 부처 59개 인증) *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취득시 사실상 시장진입이 곤란 (준강제 인증)
민간인증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 자율 시행 (Q마크 등 60개 인증)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은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인증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의 인증의 일종임
-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스마트워크의 확산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현재 시행중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1999.4 시행)의 경우 건설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했으며 구내통신설비 고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 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기준을 통해 서비스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워크서비스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마트워크 품질인증 기준은 스마트워크서비스 유형별로 품질인증의 규격을 정하게 될 것임

## 2. 인증의 실시 및 비용 부담(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이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음
  - 인증을 위해서는 구체적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함

※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유통품질인증 심사방법



-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온라인상의 콘텐츠 서비스품질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
  - 고품질의 콘텐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이용자피해를 줄이고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 활성화 도모하는데 목적
-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심사위원회 등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증 신청시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할 수 있음
  - 인증 수수료 산정은 이러닝 품질평가처럼 수수료 금액을 특정하여 두고 모든 인증 신청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과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처럼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

※ 【참고 1】 정액 수수료 방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러닝품질평가 수수료>

➔ 교수학습용 콘텐츠 평가 수수료 안내

종수/강좌수	수수료(천원)
1	390
2	780
3	1170
4	1560
5	1950
N	390 * N

➔ 교수학습용 콘텐츠 재평가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천원)
내용평가	150
무결성평가	90

- 내용평가 재평가시는 항상 무결성 평가를 함께 신청해야 함
- 무결성평가 재평가시는 무결성 평가만 신청함

※ 【참고 2】 인증 수수료를 공식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의 수수료 환산 방식>

■ 인증심사 수수료

- 소프트웨어 기술과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 인증심사수수료는 종업원수, 서버수를 고려한 심사일 수에 따라 산정됨

$$\text{인증심사 수수료} = \text{신청비} + \text{직접인건비} + \text{직접경비}$$

$$\begin{aligned} \text{심사일 수} &= \text{종업원 수에 따른 심사일 수} + \text{정보보호시설 규모에 따른 심사일 수} \\ \text{직접인건비} &= \text{기술자등급별단가(노임단가)} \times \text{심사일 수} \end{aligned}$$

### 3. 품질인증을 위한 전문인증기관의 지정(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스마트워크 품질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 인증기관지정 필요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 【참고】 유사 품질인증기관과 인증명칭

주관부처	인증기관	인증명칭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	<a href="http://www.kmrb.or.kr/">http://www.kmrb.or.kr/</a>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	<a href="http://www.grb.or.kr/">http://www.grb.or.kr/</a>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유통 품질인증	<a href="http://www.goodcontent.or.kr/">http://www.goodcontent.or.kr/</a>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ES마크	<a href="http://www.kats.go.kr/">http://www.kats.go.kr/</a>
	기술표준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a href="http://www.kats.go.kr/">http://www.kats.go.kr/</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Trust 인증	<a href="http://www.kiec.or.kr/">http://www.kiec.or.kr/</a>
	한국디자인진흥원	GD 마크	<a href="http://www.gd.or.kr/">http://www.gd.or.kr/</a>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a href="http://www.ksa.or.kr">www.ksa.or.kr</a>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 마크	<a href="http://www.tta.or.kr/Home2003/main/index.jsp">http://www.tta.or.kr/Home2003/main/index.jsp</a>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a href="http://www.dpc.or.kr/">http://www.dpc.or.kr/</a>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마크	<a href="http://www.kiscom.or.kr/">http://www.kiscom.or.kr/</a>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e-Privacy 마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a href="http://www.keris.or.kr">www.keris.or.kr</a>

#### 4. 피인증기관의 인증내용표시 및 홍보(제4항)

○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인증마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워크 이용자가 품질 인증을 받은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품질인증제의 도입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차별화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함

#### ※ 【참고 1】 우리나라의 품질인증 마크의 사례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제품인증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 【참고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마크

5. 품질인증 취소(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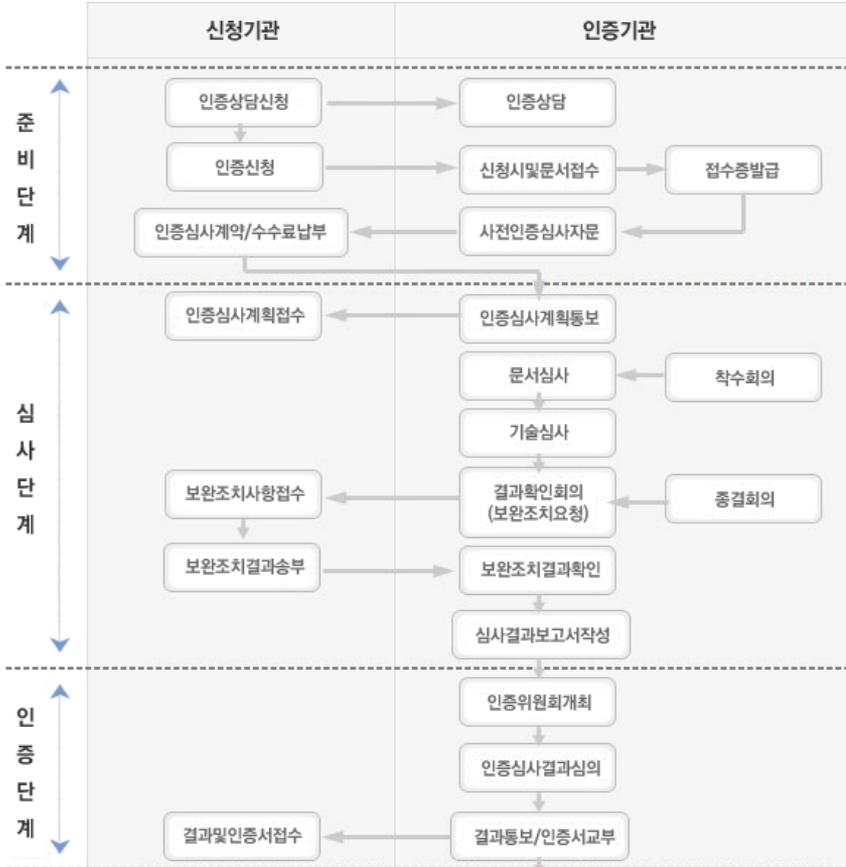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바, 이를 위반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법적근거 마련

6. 인증 절차 및 취소(제6항)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신청, 인증기관의 접수, 인증원의 심사, 전문가 또는 인증위원회의 평가, 인증의 부여 등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취소의 경우는 일종의 불이익 처분이므로 절차 및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여야 함
- 인증의 심사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인증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함

## ※ 【참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절차

### ▣ 인증절차도(전체)



---

## 【참고】 유사 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 관리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5.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주요 논의사항

### 1. 품질인증기준을 품질인증등급제로 마련하자는 견해

-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의 자율적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 등급제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원하자는 견해 제기

- ⇒ 스마트워크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센터에 대한 정보통신 솔루션, 업무시설,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에 대한 품질등급을 분류하여 수립 가능
- ⇒ 다만, 법률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증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고시제 정권을 부여하고, 고시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 가능

### 【참고】 품질인증등급 대상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단말	실감형 영상회의, UC, 유무선 전화
보안	솔루션, 단말 등 통합보안 수준, CCTV, 출입관리
통신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클라우드
고객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포털, 이용관리, 가상안내데스크, 근태관리
편의시설	육아, 건강관리, 주차 등

-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특등급, 1등급, 2등급 등 3~4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엠블렘 부여

##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련 기준안의 마련

- 신뢰성있는 스마트워크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설정,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평가방법,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취소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까지 필요하다는 견해 제기

### 【참고】 관련 입법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본 법안 제11조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품질인증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본래 품질인증 전문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방통위는 업무위임시 그 심사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인증기관을 선정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취소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증기관의 업무를 다시 환수 가능

### 3. 품질인증기관에 필요한 경비

-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신청인부담이 아니라 해당부처에서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규화하자는 견해 제기

---

#### 【참고】 관련 입법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원 등)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품질인증은 민간단체 등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를 통한 서비스사업에 대한 보장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4. 품질인증기준으로서의 시설기준 논란

- 최초 스마트워크의 품질인증 논의에서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품질인증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스마트워크서비스 관련 등록 등 인허가기준으로 논의되었음
- 그러나 본 법이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임을 고려하여 인허가와 같은 규제수단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음
- 그리하여 본 법에서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품질인증의 한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제12조

##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이하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환경 분석 및 업무적합도 평가
2. 스마트워크 적용기술 및 법제도 관련 정보의 제공
3.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4. 스마트워크 보안대책 자문 및 수립
5. 스마트워크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6.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7. 그 밖에 스마트워크 도입 및 실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워크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컨설팅 업무에 종사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 취지

-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민간부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스마트워크 환경 분석 및 평가, 기술 및 법제도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보안대책 자문 및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스마트워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주도적으로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조성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마트워크 적용기술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보안문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과 같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컨설팅전문기관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 스마트워크 관련 개발 및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재수단으로 컨설팅전문기관 지정취소권한을 부여함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제1항)

- 스마트워크는 아직 국내에 도입이 시도되는 단계이므로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려는 사용자가 선행 사례나 관련 정보를 구하거나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 따라서 사용자들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제2항)

-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정 당시에 근무하던 인력 등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유효기간을 됴으로써 일정 기간마다 해당 업체의 스마트워크 컨설팅 전문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 전문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의 예

기관 종류	ISMS 인증기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유효기간	3년 (정보통신망 시행령 제49조제1항)	3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3항)

## 3. 비밀유지 의무(제3항)

- 스마트워크 컨설팅을 위해서 사용자의 설비 규모, 영업방식 등 중대한 영업비밀을 컨설팅 전문기관에 알려주게 되는 바,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누출될 것을 우려하여 컨설팅 이용을 기피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 컨설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컨설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4.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제4항)

○ 컨설팅전문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i) 컨설팅전문기관이 지정신청 당시에 입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ii) 컨설팅전문기관 지정 당시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iii)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즉 컨설팅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 중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컨설팅전문기관이 사용자로서 해당 직원의 행위에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5. 지정 기준·절차·방법 및 지정 취소절차(제5항)

○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 기준(인력·설비·자본금 등), 지정 절차(공고→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지정 방법(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및 지정 취소절차(취소통지, 청문 등)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참고】 유사 입법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이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제35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수인 또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6조 (휴업·폐업·재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휴업·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주요논의사항

1.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컨설팅관련 논의 필요하다는 견해

○ 스마트워크 컨설팅은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현안 해소를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범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 전체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 ⇒ 고용노동부에서 스마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행정부처에서 스마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과잉근로 및 과잉감시, 근로환경 열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장치 마련 필요
- ⇒ 스마트워크가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을 양성한다는 비난가능성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상담가능토록 함

## 2. 전문컨설팅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

- 전문기관의 컨설팅은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다는 견해

- ⇒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기 정착 및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업체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경비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스마트워크 컨설팅이 각 기업에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 경우 민간단체 등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컨설팅 신청인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제4장

##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 장려

### 제13조

###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를 도입·시행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도입·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2. 전기통신서비스요금, 전기요금 등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이용료
3. 제12조에 따른 스마트워크 컨설팅 비용
4. 그 밖에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취지

- 기업 경영에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영자 증가
  - 현재 39.2%의 경영자가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체 70%가 향후 3년 이내 도입할 계획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의지는 높으나 투자비용 부담 및 특화솔루션 부족으로 도입을 저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 중소기업 도입율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8.1% (2010.6, 중소기업기술진흥원)

- 따라서 고가의 장비구축비·이용요금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도입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제1항)

-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스마트워크를 도입·시행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료, 스마트워크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 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

## 2. 중소기업 우선지원(제2항)

- 아울러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

###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

업)과 중소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 【참고】 유사입법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 지원의 내용·방법 등 대통령령 위임 (제3항)

- 사용자를 위한 지원의 내용·기준·절차·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워크의 사회적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법 제18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3조(기술보호·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내용
2.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 등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호·육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기반 확충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

【참고】 해외 스마트워크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례

□ 미국

- 주 정부별로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기업 및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

구분	내용
버지니아 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재택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기술지원 및 컨설턴트 지원
오리건주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제공제 및 저리용자 제공
조지아주	-텔레워크 도입·강화를 위한 텔레워크 평가비용을 주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함 -근무자 20% 이상을 텔레워커로 전환하는 경우,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메릴랜드 주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종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텔레워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소득세 공제
뉴저지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 소득세의 공제대상으로 함
워싱턴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미시시피 주	-시각장애인의 텔레워크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일본

- 기업의 텔레워크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보급 촉진

구분	내용
대상	-텔레워크 설비를 도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설비	-VPN, 네트워크 감시장치 등 텔레워크 관계설비
세제특례	-취득 후 5년도분에 대해 상각 자산세 경감조치(과세표준을 2/3으로 조정)

## □ 유럽

- o 텔레워크 도입에 적극적이며, 주로 노사관련 협약에 의해 추진

구분	내용
독일	-헷센주(Land Hessen)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을 실시 -텔레워크를 위한 인프라, 기기, 집기, 트레이닝 비용 등 투자액 50% 지급
헝가리	-텔레워크 인력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텔레워크 협회와 고용위원회가 공동관리하며, HUF 130~150억 불 책정
영국	-햄프셔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민간센터의 초기 구축·운영비 지원(425,000파운드)

## 제14조

##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의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 또는 스마트워크를 희망하는 자에게 스마트워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저소득 근로자 등이 스마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근로자 등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
2. 스마트워크 근로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스마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③ 사용자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저소득근로자 등이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3항에 따른 우선 고려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의 참여를 확대·촉진시키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 또는 스마트워크를 희망하는 자에게 스마트워크를 위한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등 스마트워크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소외 방지 필요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 주요 내용

### 1.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육 지원(제1항)

- 스마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여성·장애인·노령층 등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음
  - 스마트워크에 대한 호감도 자체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할 때 15.8%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워크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출처 : '10.10월, KT경제경영연구소)
- 따라서 스마트워크의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 또는 스마트워크를 희망하는 자에게 스마트워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제2항)

-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등은 스마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계층인데 이들의 근로에 있어서는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구됨
  - 특히 스마트워크의 업무방식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스마트워크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1) 건강과 업무 효율을 고려한 시설 설치(제1호)

-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설비나 사무용 비품을 설치할 때에는 장시간 사용해도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설비의 선택·배치 등에 고려하여야 함

## 2)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2호)

- 스마트워크가 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해당 기기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상시적인 복지 혜택이 주로 사내 또는 회사 건물 근처의 건강증진 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건강 유지에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음
- 정부가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3) 그 밖에 스마트워크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제3호)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워크용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등 건강관리 외에도 취약 계층의 스마트워크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행

## 3. 장애인 등 노약자에 대한 우선 선택권 부여(제3항)

-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신체적인 이유로 다른 근로자보다 스마트워크가 더 필요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선정할 때 담당업무가 스마트워크에 부적합한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 등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4. 지원대상 및 우선 고려대상(제4항)

○ 제1항은 스마트워크 근로자 또는 스마트워크를 희망하는 자에게 스마트워크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스마트워크 근로자나 희망자의 교육 등을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학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제3항은 사용자가 스마트워크 근로자 선정 시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저소득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우선 고려대상의 범위가 해당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한 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

1) 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3) 그 밖에 교육 관련 지원대상 구체화의 예 :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6. 삭제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참고】 유사입법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

##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

제15조(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스마트워크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방신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취지

- 정부의 스마트워크 추진전략 발표 이후 스마트워크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스마트워크 수준은 초기 단계임
  - 스마트워크 인식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산업별 성공사례 선정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
  -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 필요한 업무적합도 및 소요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 주요 논의사항

#### 1. 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을 사업 추진(제1항)

- 스마트워크의 정착을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어도 면대면 조직문화, 근무시간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인사평가제도 등에 대한 관리자나 근로자의 인식전환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움

1) 우수사례 발굴 포상·홍보(제1호)

- CEO 인식변화를 위하여 도입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및 모범사례 홍보·전파
  - 민간기관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독려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언론사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

**【참고】 유사업법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2) 스마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2호)

-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스마트워크 편익, 도입절차 등 CEO, 관리자, 이용자, 개발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공이 필요
  - 스마트워크 포럼과 연계하여 컨퍼런스·정책설명회 등 행사 개최 등
-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한 스마트워크 시행을 위하여 컴퓨터의 설치부터 작업책상과 주변기기의 배열, 조명, 컴퓨터의 보안, 스트레칭 방법, 근무 중의 방해에 대한 대처까지 스마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음
  - 이러한 교육매뉴얼은 정부주도로 개발, 삽화와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이 쉬운 매뉴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음

<<미국의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O.K.	Not O.K.	<b>WORK HABITS</b>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Use the wrist rest to rest forearms between keystrokes. Wrists and hands should move freely while typ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While typing move your hand and arm together; use the wrist rest only between strok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Keep wrists straight when using the keyboard. Adjust the keyboard tray height and angle if necessary to maintain a neutral posi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While using a pointing device, avoid awkward positions of the arms, hand, and shoulders. Position the mouse at the same level as the keyboard. A mouse support tray may be used to reduce reaching by allowing a mouse to be used near the keyboard. Mouse platforms or stages can be used to bring the mouse closer if necessa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Use a <i>light</i> touch with the keyboar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Hands should be in a relaxed position on the keyboar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Clean the monitor screen regularl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Change foot position oft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Vary your tasks and take frequent microbreaks away from the keyboard and monito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Change your body position frequently, readjusting your chair as necessa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Stretch often while sitting or standing to avoid muscle fatigue.



---

**【참고】 유사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실천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및 스마트워크의 날 지정(제3호)

○ 민·관·산·학계가 참여하는 스마트워크 포럼을 구성하여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컨퍼런스·정책설명회 등 행사 개최 및 실천캠페인(예 : 스마트워크 Day) 등 근무문화 개선, 웹사이트 운영 등 홍보 지원
- 스마트워크 포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워크 근무기준 개선 및 스마트워크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추진

○ 스마트워크의 날 지정

- 스마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스마트워크의 확산을 위한 기념일의 지정

---

## 【참고 1】 유사입법례

### 발명진흥법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총무공탄신기념일에관한규정

4월 28일을 총무공탄신기념일로 정한다.

---

---

## 【참고 2】 해외 각국의 스마트워크 관련 행사

### <미국 스마트워크의 날(Telework Day)>

매주 하루를 스마트워크의 날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실시하도록 독려개인 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스마트워크의 날을 지정·실천하기로 선언하는 캠페인. Telework Day에 참여한 기관 중 우수기관 및 참여자를 스마트워크의 날 챔피언(Champion)으로 선정·홍보

### <미국 머니트리(Money Tree) 캠페인>

스마트워크를 통해 비용절감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행사로서 스마트워크 참여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머니 트리에 매달려 있는 돈(\$2)을 주는 캠페인  
다음 행사 개최지를 투표로 선정하는 등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EU 스마트워크의 날(European Telework Information Day) 선언>

유럽연합집행기관인 European Commission이 스마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념한 날

### <EU 스마트워크 위크(European Telework Week)>

유럽내 국가들이 연합하여 1주간 다양한 스마트워크 홍보를 위한 활동 및 행사 학교·마을방문 로드쇼, 비즈니스 및 기술세미나, 컨퍼런스, 시연회, Opinion Leader의 스마트워크 지지 서명, 모금운동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스마트워크 상(European Telework Award)>

유럽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으로 우수실천기관상, 홍보 캠페인상, 기술혁신상, 공공정책상, 녹색성장 공헌상, 우수 기사 또는 방송프로그램 상 등이 있었음

---

## 2.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 및 절차(제2항)

- 문화 확산 장려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은 예산 지원을 수반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지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제16조

## 국제협력

제16조(국제협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스마트워크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스마트워크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정취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워크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여 전세계에서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설명함

### □ 주요내용

#### 1. 국제협력의 추진(제1항)

- 스마트워크 근로자가 해외에 있는 상대방과 회의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같이 다른 시간대나 지역과의 국제적인 교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스마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련 분야에 우리나라 단체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 스마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텔레프레즌스 관련 국제기구(ITU-T SG16/Q5)

The screenshot shows the ITU-T Study Group 16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Question 5/16 - Telepresence systems" and includes the following text:

(New Question)

Motivation Telepresence represents an important evolution of the videoconferencing market.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mainstream video applications begin to offer telepresence features. Many products exist today that, although they are based on IETF SIP and ITU-T H.323 protocols, lack interoperability due to proprietary extensions needed to these base protocols to offer user-rich experience. The increased penetration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higher user awareness of video applications coupled with financial and environmental gains brought by remote collaboration tools have brought a boost to applications at telepresence. This makes it important that standardized solutions be developed to ensure multi-vendor interoperability on a basis.

**Study items**

Study items to be considere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Definition and scope of telepresence systems
- Functions and service requirements for interoperable telepresence systems
- Standardizing the means for full interworking between telepresence systems, including means facilitating the coherent presentation of multiple audio and video streams – allowing remote participants to be rendered at their true size for the apparent distance, maintaining correct eye contact, gesticular cues, and simultaneously providing spatial audio that is consistent with the video presentation, as well as taking into account the meeting environment to provide a more immersive experience.
- Standardizing the means for interworking between current telepresence systems and other systems, including the legacy telephone network and advanced multimedia systems, through additions to ITU-T H.246 and other Recommendations ; necessary.
- Considerations on how to further enhance telepresence systems to mitigate negative impact on climate change and to encourage a positive impact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asks**

Task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Define services and functions to support interoperability of current generation telepresence systems using existing protocols such as ITU-T H.323 and SIP.
- Identify modification and/or extensions needed in existing protocols to support telepresence,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ndardization bodies, forums and consortia, as needed.
- Modify and/or extend existing protocols under the ITU-T SG 16 responsibility to enable interoperable telepresence systems (particular, Recommendations of the ITU-T H.300 series).

## 2. 국제협력 관련 업무(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기술과 인력 교류, 국제표준화 연구,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거나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직접 협력할 수 있음

---

## 【참고】 유사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스마트워크 이용 보호 등

### 제17조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 제17조(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경우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이 출퇴근시간, 휴식 시간 등 통상의 근로와 다른바, 이에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근무 감독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내용

- 스마트워크는 근무와 일상생활이 혼재할 수 밖에 없는 근무방식이어서, 노무관리에 유의할 사항도 많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사용자의 노력이 필요함.

※ 근로자가 스마트워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

## 1. 근로자의 건강보호(제1항)

-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스마트워크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게 되므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재택형 스마트워크에서 사업주가 컴퓨터·의자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특히,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에도 스마트워크를 하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2.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제2항)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근로자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자택이 근무장소인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에는 근무와 일상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감독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사용자가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정보 유출방지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워크용 단말기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모니터링 실시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3.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조치의 방법·절차 등(제3항)

-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모니터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사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

### □ 주요 논의 사항

- 초안상의 21조~25조의 근로자 보호조항은 자칫 근로자에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총칙에 사용자 권리의무에 선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었음
- 차별금지, 건강보호, 사생활 보호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노동관계법상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4호(“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와 14호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사협의회 협의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
- 스마트워크 환경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규정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다른 법률의 예를 검토해 보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에서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관리 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초안 제21조 2항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 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빌미를 주어 사업장 환경이 열악한 경우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함

○ 근로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방통위 스마트워크촉진법안에 환경기준을 위반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이중적 처벌이 되어 촉진법적인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 개정 관련하여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초안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세밀히 규정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제22조(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 제23조(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조문을 통합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조항으로 일원화하였음

※ 초안 제22조(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보호)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컴퓨터 관련 질환의 예방 및 방지
2. 스마트워크 공간의 안전성 및 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 검사의 실시
3. 과잉근로에 대한 방지
4. 쾌적한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초안 제23조(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사생활보호)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자택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할 때에는 미리 해당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방문의 목적, 일시, 방문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관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관찰의 목적, 방법, 시간,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참고> 외국의 스마트워크 근로자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근로기준)** 국가공무원만 별도규정(미국)하거나, 사회전반의 스마트워크근로자 관련 규정을 마련(유럽)
  - 국가별로 법제화수준(노사협약, 노사정협약, 소셜파트너 협약, 입법화) 결정
- ※ 주요 이슈 : 스마트워크의 정의, 스마트워크 계약의 자발성과 가역성, 고용조건, 자료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장비, 건강과 안전, 일의 조직화, 교육, 단체권,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 **(스마트워크 진흥)** 스마트워크 설비 구입 및 스마트워크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 **(정보보호)** 일본, 미국 등의 경우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제시

## 제18조

## 스마트워크서비스 정보보호기준

제18조(스마트워크서비스 정보보호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기준(이하 "정보보호기준"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2. 스마트워크용 단말기의 분실도난 및 정보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기준의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보안 등에 관한 정보보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 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침해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 내용

## 1. 정보보호기준 고시(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발표한 바 있음
- 이 권고는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영상 회의 등 스마트워크에 특유한 시설에 관한 보안방침을 규정하고 있음

## 2. 정보보호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항)

### 1) 침입방지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제1호)

- 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해커 등의 침입으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보호 권고는 인프라 차원에서의 침입방지를 위한 보호조치와 서비스 차원에서의 보호조치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 2) 단말기 보호조치 및 정보의 유출·변조 등 방지(제2호)

-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용되는 정보통신단말기와 스마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정보보호 권고는 단말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스마트워크 센터 내 공용 PC에 대한 보안대책, DRM 등 콘텐츠 보안대책, 정보유출 및 위·변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할 것을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자에게 권고하고 있음

### 3)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보호조치(제3호)

○ 업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이 불안정하고 서비스 중단이 자주 발생한다면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인력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4) 조직관리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제4호)

○ 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솔루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설을 취급하는 인력의 정보보호 기술 능력과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보호 권고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조직을 구성할 것과 스마트워크 환경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

## 제19조

## 보호대책 수립시행

제19조(보호대책 수립시행) 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제18조에 따른 정보보호기준에 의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에 다음 각 호의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단말기 분실 및 도난
2. 정보유출 및 위변조에 대한 대응
3. 그 밖의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 제정취지

- 구체적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은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형태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됨
- 법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는 정보보호지침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 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이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및 시설 형태에 적합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1.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수립(제1항)

-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보호기준에 맞추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술적 대책이라 함은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기술을 스마

- 트위크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대책이라 함은 스마트워크 센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등이 위치한 시설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CCTV, 바이오인증 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함
- 관리적 대책이라 함은 스마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조직구성 및 보안교육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사용 시의 보안수칙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함

## 2. 보안침해사고 대응절차의 규정(제2항)

### 1) 단말기 분실 및 도난시 대응

- 스마트워크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단말기 내에 저장된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응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 침해사고 대응조직에 지체 없이 알리고 신고를 받은 침해대응 담당직원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회사별로 필요함

### 2) 정보유출 및 위·변조에 대한 대응

- 스마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나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직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사내에 침해사고 신고센터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0조

## 정보의 침해 누설 등의 금지

제20조(정보의 침해 누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로 인해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

### 주요내용

-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로는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 또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본인 및 소속직원 등이 해당하며 직위나 경력 정도는 불문함
  -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상 다른 사람의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경우에는 모두 해당됨
-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보다 넓음
  - 개인정보 이외에 타인의 영업비밀 등도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 【참고】 유사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제46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1조

## 장애 복구 등

제21조(장애 복구 등) 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워크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워크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장애에 따른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속 복구 의무와 재발방지조치 의무 등을 부과함.
- 스마트워크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근로자를 보호

### □ 주요내용

#### 1.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조치(제1항)

- 스마트워크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수의 사용자와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을 경우 사용자 등은 스마트워크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발방지조치란 장애의 원인이 된 취약점을 분석하여 최신의 기술로 이를 보완하는 것을 의미함

## 2. 근로자의 배상책임 여부(제1항)

- 스마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시 정해진 지침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하여도 사소한 오류만으로도 서비스 장애로 연결될 수 있음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은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근로자가 장애발생에 가벼운 과실만 있더라도 스마트워크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워크를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 경과실로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현저히 적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차별이 될 수 있음
- 특히 스마트워크의 효과로 기대되는 것에 고령자와 여성 취업 증가가 있는 데 이들은 평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임
  - 자신의 실수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생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의 작동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스마트워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스마트워크 실시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됨
- 따라서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

**【참고】 유사입법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 (복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호진흥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6장 보 칙

### 제22조 스마트워크 촉진재원의 조달

제22조(스마트워크 촉진재원의 조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개발
3. 제15조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4.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의 운용 및 관리
5. 그 밖에 스마트워크의 촉진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함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의 조성근거 마련(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촉진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야 함

○ '자금'이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정치자금"의 정의 참조)

-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금전 등은 보통 '기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기금 조성의 사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등

○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자금'과 '기금'의 용례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적자금의 정의를 보면 공적자금은 여러 기금과 자금이 모여 다시 한 개의 자금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 이 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들과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촉진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2.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의 사용목적 지정(제2항)

○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은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스마트워크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그 밖의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스마트워크서비스 등의 표준화(제10조),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제11조), 컨설팅전문기관의 지정(제12조), 사용자에 대한 지원(제13조),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14조), 국제협력(제16조) 등의 시행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주요 논의사항

- 재원조달을 위한 자금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 스마트워크 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재원의 조성을 자금의 형태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 스마트워크 촉진자금을 자금의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기금의 형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재원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 차이는 없음
  - 다만, 기금으로 설치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동법 제14조에 의해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재원조달을 위한 자금조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재원조달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다른 입법례에서는 대부분 자금의 조성, 재원마련근거, 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근거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재원마련근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재원마련근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다는 의견 존재

---

## 【참고】 유사입법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자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 제23조

##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촉진 등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현황 등의 통계조사·관리 및 실태 조사
2.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제고
3. 스마트워크서비스 모델의 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워크 확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워크의 도입 또는 확대를 위한 컨설팅
6. 스마트워크 관련 각종 상담 및 피해의 접수·처리
7. 스마트워크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항 각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업내용을 명시함

## □ 주요 내용

### 1.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설립(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스마트워크를 관 주도의 정책이 아닌 민·관 협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민간분야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진흥 협회를 설립

### 2.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법적 성격(제2항)

- 협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함으로써 협회가 독자적으로 법률상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3. 스마트워크진흥협회의 업무범위(제3항)

- 스마트워크진흥협회는 통계조사·관리 및 실태조사, 홍보, 국제협력 등 일반 활동과 함께 서비스 모델의 개발·보급, 스마트워크 확산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컨설팅, 상담 및 피해 접수 등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근로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함

### 4.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용 보조(제4항)

- 스마트워크진흥협회는 실태조사·홍보·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5.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제5항)

- 제2항에서 협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종류가 있어 "법인"이라는 규정만으로 성격이 불분명함

- 이 법에서 정한 외에 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협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설립절차 등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절차·방법은 민법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97조까지 설립, 대표·이사·감사·총회 등 기관, 해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협회 설립에 관한 입법례 검토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협회 설립근거, 법적 지위, 민법규정의 준용 등 간단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경우와

-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외에 협회의 인가절차,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스마트워크 촉진사업의 추진체계에 있어 협회의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워크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 스마트워크 촉진 관련 대외활동을 스마트워크진흥협회에서 수행하게 되면 민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 또한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협회의 업무범위 역시 민간협회가 실제 집행하기에 적절함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① 지식정보보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4조

## 자료제출 등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품·서류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 제정취지

-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성 확보

## □ 주요 내용

### 1. 관계 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법 제29조 제1항 제5호)

⇒ 자료 제출·열람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

### 2. 사업장 출입 및 검사권(제2항)

-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출입·검사 방해, 거부, 기피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3.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료 제출 요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 법적근거, 기간, 자료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 4.사업장 출입 검사시 사전 통지(제4항)

- 사업장 출입 검사는 해당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검사시작 7일 전까지는 검사계획을 통지해야 함
- 다만, 사전 통지로 인해 검사계획을 알게 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가 증거인멸 등 검사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시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

#### 5. 사업장 출입시 권한 표시 증표 제시(제5항)

- 불필요한 사업장 출입·검사로 인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고, 사업장 검사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사업장 출입 검사시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공무원증)와 성명·출입목적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도록 함

#### 6. 결과통지(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업장 출입 검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를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관련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함

### 주요 논의사항

- 이 법은 규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가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 및 사업장 출입 검사권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 자료제출 요구의 요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법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규제적임

※ 【참고】 비교입법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8조(보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검사권한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스마트워크 이용활성화 환경 조성 및 확산 장려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사업자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함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 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제정취지

-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여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 해당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①위반행위의 중지, ②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예
  - 사용자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스마트워크 유지를 위한 통상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경우 (제4조), ②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제17조)
  -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① 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8조), ②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제19조), ③ 스마트워크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하지 않고 방치 중인 경우 또는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21조)

-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가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이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자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함

## 주요 논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모든 이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모든 이법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개별 위반행위를 나열하고 있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이 무의미해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동법 제29조 제1항 제8호)**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약하거나 시정 기회를 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25조의 시정명령과 제29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 모두 필요함

## 참고 유사입법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자통신사업의 업무차질차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자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

## 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이 법에서 부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위법행위 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 따라서 법률의 효율적 집행 및 신속한 권한 행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도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하고 있음
- 스마트워크 관련 기관·단체로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23조에 따른 스마트워크진흥협회 등이 있으며, 실태조사·문화 확산 장려·자료제출 요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 가능

## □ 주요 논의사항

- 위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유형에 관한 논의
  -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스마트워크 서비스·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추진, 스마트워크 서비스 품질인증 등의 권한
  -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참여장려를 위한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국제협력 추진 권한 등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영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영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영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

##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제정취지

-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탁에 따른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직무상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바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 □ 주요 내용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뢰죄에 관한 형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됨

※ 【참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제7장 벌 칙

### 제28조 벌 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3항,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 컨설팅 업무나 기타 스마트워크와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 중대한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엄격한 규제 필요

#### 주요 내용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제1호)

- 기관의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있으나, 컨설팅 업무의 특성상 고객인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급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비밀 누설 우려가 존재
  - 컨설팅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업무상 비밀누설 시 형사처벌 부과
  - 스마트워크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

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반행위	대상자	조문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스마트워크 컨설팅 종사자	제12조 제3항, 제4항 제3호

※ 【참고】 유사 법률과의 형량 비교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업무,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향평가 업무 종사자
형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2조제1항제5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2조제3호)

2) 스마트워크와 관련 취득한 타인 정보의 누설 등 금지(제2호)

- 누구든지 스마트워크와 관련하여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행위	대상자	조문
·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제20조

※ 【참고】 유사 법률과의 형량 비교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자의 훼손·침해·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타인 정보 훼손 등
형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5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5호 및 제6호)

 주요 논의사항

- 형사처벌이 주로 정보의 유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다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서 위반행위간 균형이 맞지 않을 우려
- 형사벌칙은 비록 행정법규에 규정되는 경우라도 법무부를 통해 양형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제정시부터 상세한 벌칙을 규정하기 어려움
- 향후 법집행과정을 통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및 법개정시 반영

## 제29조

## 과태료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3. 제1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18조 제2항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자
5.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7.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열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정취지

- 스마트워크의 도입 활성화 및 보안 침해사고 또는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령 불이행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부과

## □ 주요 내용

### 1.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제1항)

	위반행위	대상자	조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행위를 한 경우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	제11조 제5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스마트워크 컨설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12조 제4항제1호
	· 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한 자	· 사용자, 근로자	제18조 제2항
	·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시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	제24조 제1항
	· 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 법을 위반한 사항 발견시	·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제24조 제2항
	· 열람 등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	제24조 제3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제25조

### 2.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항)

-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이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모두 동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을 위한 스마트워크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동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음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우선 적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의제기(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4.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제4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과태료 재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제41조(재판비용) ①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

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5. 체납처분(제5항)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고】 유사입법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6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주요 논의사항

- 이 법에 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차등적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천만원 이하와 1천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 제기
- 이 법의 적용범위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포함되는데 공공부문에서의 범위반자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방 관련 법률 등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가 있음

### ※ 【참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를 하도록 규정

-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이란, 소방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시행령 제8조)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록 2>

# 2011년도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시범교육 설문지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은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시범교육에 동참 해주신 교육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금번 시범교육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만 활용 될 것입니다.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를 위한 금번 설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11. 24.

설문기관 및 담당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교육기획팀 (담당 과장 이학수)

**1.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곳은?(✓표하세요)**

-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③개인사업    ④관공서    ⑤군부대    ⑥교육기관
- ⑦기타(                    )

**2. 귀하가 소속된 직장의 지역은? (✓표하세요)**

수도권		광역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귀하의 직위는?(✓표하세요)**

- ①CEO(이사이상)    ②관리자(과장~부장)    ③근로자(일반사무직~대리)
- ④기타(                    )

4. 귀하의 근속기간은?(✓표하세요)

- ①1년미만 ②1년~3년미만 ③3년~5년미만 ④5년~7년미만 ⑤7년이상

5. 귀하의 성별은?(✓표하세요)

- ①남자 ②여자

6. 귀하의 최종학력은?(✓표하세요)

- ①고졸 ①전문학사 ②학사과정 ③학사 ④석사과정 ⑤석사 ⑥박사과정 ⑦박사 ⑧기타

7. 귀하는 스마트워크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응답시 장소기입 (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예. 스마트워크분당센터, 재택, 모바일오피스 등)

- ①예(장소 : ) ②아니오

8. 스마트워크에 대한 귀하의 호감도는?(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9. 귀하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0. 귀하가 스마트워크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1. 본 스마트워크 교육내용에 대한 귀하의 이해 정도는?(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2. 본 스마트워크 교육교재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	2	3	4	5	6	7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13. 본 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향상의 효과는?(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	2	3	4	5	6	7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14. 교과목 담당교수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세요)

1	2	3	4	5	6	7
매우낮음	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높음	매우높음

15. 스마트워크 교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스마트워크 도입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저 자 소 개 ●

---

김 성 우

- 부산대 건축공학과 졸업
- 부산대 행정학과 석사
- 현 한국전파진흥협회 기획조정부 부장

김 미 정

-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현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장

황 인 표

- 연세대 철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과 석사
-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권 현 준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상법)
- 미네소타 로스쿨 LLM(JD)
-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이 학 수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부 졸업
- 전. 팬택애키투리텔 전임연구원
- 현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2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martwork in Private Sector)

---

---

2012년 1월 일 인쇄

2012년 1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mailto: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쇄 한울 TEL: 02-2279-8494

---

